

---

최옥란20주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컨퍼런스

#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

일시 | 2022년 7월 1일(금) 오전10시 - 17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갤러리 및 제1소회의실

주관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신현영, 최혜영의원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후원 | 인권재단 사람



# 목 차

■ 식 순 .....	3
■ 인사말 .....	5

## ■ [증언대회] 2022년의 최옥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목소리

□ 발표1. 수급신청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서류요구 .....	16
□ 발표2.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탈락 .....	18
□ 발표3. 근로능력평가와 자활사업 참여 경험 .....	21
□ 발표4. 치료 중 의료급여 비급여 항목의 부담 _노들장애인야학 박누리 .....	24
□ 발표5. 적은 수급비가 침해하는 수급자의 권리 _ 부산반빈곤센터 임기현 .....	27
□ 보충자료. 상담 사례로 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_빈곤사회연대 김윤영 .....	30

## ■ [토론회]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 발제1. 가계부조사 결과분석 _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43
□ 발제2. 가계부조사 참여자 질적조사 및 활동가 FGI를 통해 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_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92
□ 토론1. 공익인권법재단 박영아변호사 .....	130
□ 토론2. 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박사 .....	134
□ 토론3.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이용재 교수 .....	135
□ 토론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민영신 과장 .....	136

## 2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 식 순

## ■ 10:00 [사진전] 수급자의 밥상, 그리고 일상

개막식 사회: 민달팽이유니온 가원 활동가

## ■ 11:00 [상영회] 최옥란열사 20주기 영상 <첫 사람, 최옥란>

상영회 GV: 부산 반빈곤센터 최고운 대표 |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

## ■ 14:00 [증언대회] 2022년 최옥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목소리

- 사 회.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가영 변호사
- 발표1. 수급신청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서류요구
- 발표2.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탈락
- 발표3. 근로능력평가와 자활사업 참여 경험
- 발표4. 치료 중 의료급여 비급여 항목의 부담 : 노들장애인야학 박누리
- 발표5. 적은 수급비가 침해하는 수급자의 권리 : 부산반빈곤센터 임기현

## ■ 15:00 [토론회]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 좌 장.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
- 발제1. 가계부조사 결과분석 :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김준희
- 발제2. 가계부조사 참여자 질적조사 및 활동가 FGI를 통해 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사무국장
- 토론1. 공익인권법재단 박영아변호사
- 토론2. 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박사
- 토론3.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이용재 교수
- 토론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민영신 과장

#### 4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안과 개선 컨퍼런스,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을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함께 하여 주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최혜영 국회의원님과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님, 그리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수급자의 밥상과 일상을 담은 사진전,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외쳤던 故최옥란 20주기 영상상영회, 수급권자 증언대회, 전국 25개 수급가구의 가계부 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컨퍼런스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컨퍼런스를 계기로 수급가구의 일상을 통해 불평등 사회 속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고 천명하면서, 이를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구체화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며,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입니다.

하지만 수급 가구의 일상을 보니 마음이 참 먹먹했습니다.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 때문에 죽음을 결심하는 사회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지, 가난으로 고통받는 빈곤층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최저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빈곤 사각지대가 두텁다는 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로 지적되어왔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2018년 말 기준 약 73만 명에 달하고 이러한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 발생 원인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도 2017년 한국 사회 보장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며 정부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2015년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2년 1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분적 완화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노인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하였을 뿐 완전한 폐지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급여를 포함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의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최후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잘 보장될 수 있도록 부

## 8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양 의무자 완전 폐지 외에도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보장 수준 현실화,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강화를 통한 최저생계 수준 도달 등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이 적잖습니다.

자활급여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마찬가지로 수급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를 위해 자활사업 활성화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컨퍼런스에 각계의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히 개진되어,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제도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애쓰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현영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현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와 물가 인상 등 어느 때보다 삶이 어려운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컨퍼런스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최혜영·정의당 이은주 의원님과 함께 공동주최하게 돼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빈곤층 복지제도 개선과 수급권자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연대모임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이라는 주제로 ‘수급자의 밥상 그리고 일상’ 사진전을 비롯해 2001년 12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달 수급비를 반납하고 명동성당 앞에서 농성했던 故 최옥란 열사 20주기 영상 상영회, 증언대회, 토론회 등 한국의 빈곤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1961년부터 시행된 생활보호제도를 대신하는 복지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또는 고재산인 경우를 제외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재산의 소득환산

## 10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액 금액과 소득평가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면 그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급자의 한 달 생계비인데요, 실생활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기준중위소득을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이미 시작된 여름철 더위와 장마는 어려운 삶을 더 힘들게 합니다.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급여 신청과정이나 절차를 단순화하고 무엇보다 제때, 제대로 지원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법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목숨을 잃는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행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관심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위해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에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전국 25개 수급 가구의 가계부 조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됐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당면한 개선과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님, 신현영 의원님, 정의당 이은주 의원님과 기초범바로세우기공동행동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발제와 토론 좌장을 맡아주신 분들과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01년, 여성장애인 당사자이자 기초생활수급자였던 故최옥란 열사는 수급권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난을 유지하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그녀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결의하며 쓴 결의문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로 저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고, 심지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그들의 삶은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최저생계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전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명시하고 있지

## 12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만, 낮은 수급액과 부적절한 소득산정기준, 수급 자격의 입증책임 전가, 권리로서 보장되지 않는 문제 등 제대로 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던 2000년 당시 100조였던 정부 총예산은 올해 600조로 여섯 배가 올랐고, 2,10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으로 네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나 생계급여는 2022년 기준 58만 3444원으로 2001년에 비해 고작 두 배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또한 여전히 3%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진 한계점을 살피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가계부조사 결과발표를 통해 수급자들에게 충분치 않은 수급액과 최저생활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점을 생생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국회의원 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입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가계부 조사 결과발표 토론회>를 준비하신 ‘기초법바로 세우기공동행동’ 과 토론회를 공동주최 하신 남인순, 신현영, 최혜영 의원님, 후원해주신 ‘인권재단 사람’ 모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가계부 쓰기에 참여해 주신 전국 25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여러분과 가계부 조사활동가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또, 오늘 발표를 맡아 주신 한국도시연구소 김준희 연구원,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활동가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꼼꼼한 분석과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토대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분들의 다양한 삶이 반영되고 권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가구소득 중앙값(2019년)과 기준 중위소득(2022년)의 격차가 큼니다. 3년이라는 시차가 있음에도 최대 30%, 약 60여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선정

## 14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기준입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30%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한 달 생계비이기도 합니다. 즉, 빈곤 기준선이자 생계비 지급 기준입니다. 낮은 기준은 가난한 이들이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막는 장벽이 되고, 제도 안에 들어온 이들에게는 낮은 급여로 또다시 고통을 안깁니다.

발표자는 낮은 급여가 침해하는 권리로 건강한 식생활 포기, 질병 치료 포기, 일상적 생활 포기(광열비·관리비 부담)를 꼽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는 정신적 고통을 가중합니다. 가계부 조사의 구체적이고도 생생한 증언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화하고,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 첫 시험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위소득을 공표하게 되는 오는 8월 1일입니다. 전 정부는 올해를 제외하고, 평균 2%대의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산출방식과 결정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낮추는 데만 활용되는지 의문입니다. 모쪼록 ‘촘촘하고 두툽한 복지’를 표방한 정부가 약속한 바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컨퍼런스 -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의 마지막 행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밥상과 일상을 담은 <수급자의 밥상 :그리고 일상> 사진전, 20년 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외쳤던 고 최옥란의 삶과 기초법 개정운동 20년을 담은 영상 상영회, 기초생활수급자 수기 공모전에 수합된 당사자의 글과 이야기가 담긴 수급권자 증언대회에 이은 자리입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으로 반영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화하여 합리적 빈곤선을 만들고, 수급자에겐 더 나은 급여를 제공하고, 다양한 삶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7. 1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의원 이은주



## 증언대회

# 2022년의 최옥란 기초생활수급자의 목소리

- 발표1** 수급신청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서류요구
- 발표2**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탈락
- 발표3** 근로능력평가와 자활사업 참여경험
- 발표4** 치료 중 의료급여 비급여 항목의 부담 : 박누리
- 발표5** 적은 수급비가 침해하는 권리 : 임기현

**발표 1.**

## 수급신청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서류요구

올해 3월 20일 오전 활동가와 함께 조건부 수급 신청을 위해 원효로1동 주민 센터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사전 작성해간 신청 서류를 전달받은 복지담당 담당자는 어머니 서류가 없다며 신청이안 된다고 하였고 같이 동행한 활동가는 거리 노숙을 했던 사실을 알렸으나 해당 직원은 저에게 가족관계 해체 및 미분양 사유서를 건네며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점 연락처를 알고 있는지 물었고 저는 작년 9월까지 연락 했다고 하자 1년 이내에 연락이 되었다면 단절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급신청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를 본 활동가가 근거 규정을 요구하자 해당 직원은 국민기초 생활법 제8조의2 시행령 6이라 적힌 메모를 건넵습니다.

저는 복지상담 담당자와 제대로 된 상담조차 할 수 없었고 1년 이내에 연락을 했었다는 이유로 수급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수급 신청은 하였으나 활동가와 동행하지 않고 혼자 방문 했다면 수급 신청은 하지도 못하고 수급 신청을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을 것입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수급 신청을 포기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가족관계 해체 판단에 대한 규정은 법령이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 지침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은 보장기관의 재량행위 라면서도 가족관계의 해체는 가족관계의 기능을 상실하여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가족관계에서 작동하는 정서적지지 경제적지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대한 소명의 합리성 객관성 전후의 일관성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용어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수급신청하고 2달이 넘었을 무렵 구청 복지 담당직원 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는 받을 수 있는데 의료급여는 받을 수 없다는 연락을 해왔고 이유를 묻자 어머니 와 1년 이내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가족관계 해체 단절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의료 수급을 포기하는 서류를 구청에 방문하여 작성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 보장안내서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8 조의 2제 2항) 에 보면 (가)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 부모 가구 자립준비 청년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나) 부양 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이 포함된 경우 (다) 부양 의무자 가구에 기초 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3가지 적용대상 요건 충족 시 조사 대상에서 제외 및 부양 의무자 관계 서류 미 징구라고 나와 있는데 구청 복지 담당 직원은 가족을 만나 부양 의무자 관계 서류를 작성 하기는 현실 적으로 어려우니 의료 수급을 포기 하라고 유도를 하였고 저는 의료 수급을 포기 하려고 활동가에게 물었고 활동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 하자 구청 직원은 그제 서야 잘못을 시인하고 민원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수급신청 한지 세 달이 지나서야 수급 확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확인을 하고 일처리를 했더라면 이리 오래 걸리지도 않고 제가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구청 복지담당자나 주민 센터 담당자의 이 같은 처사는 수급권자를 기만하고 수급권자의 수급신청 지체를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급권자의 권리가 보장받고 침해받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갈 당부 드립니다.

**발표 2.**

##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탈락

안녕하세요. 홈리스야학 학생 께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짱이입니다.

[께쇠]

부모님은 제가 성인이 되기 전에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살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삿짐센터에서 주로 일하면서 센터에서 먹고 잤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알고 지내는 집사님과 같은 보험에 다니는 아주머니의 소개로 선을 봤습니다. 상대 쪽 집에서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부모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교회를 꾸준히 다녀서 점수를 높게 받았고,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같이 영화도 보고, 케이블카 타고 남산 타워도 올라가고, 1년 동안 집에 데려다주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시집오면 잘해주겠다는 말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1999년, 38살에 옆에 있는 반짱이님과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종로구 홍지동 완성빌라 반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전세 900만 원으로 마련했습니다.

무지개 이삿짐센터에 다니면서 월급쟁이로 한 달에 백만원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먹고살기에는 돈이 너무 적어서 현대 이삿짐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이유는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어서였습니다. 이삿짐센터에서 부르는 날이 많을 때는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삿짐센터에서 점점 부르는 횟수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한 달에 한 번 나가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일을 기다리면서 모아 놓은 돈을 다 썼고, 복지 지원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서 반짱이님과 같이 무

료급식소나 간식 주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지냈지만 빛은 없었습니다. 2011년, 종각역 지하에서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을 만났고, 그때부터 아랫마을에서 밥도 먹고,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반짝이님이 공공근로를 다녔고, 2015년, 정신지체 2급 장애등록이 되면서 장애 연금도 받았습니다. 장애등록은 되었지만, 생계를 위해 공공근로는 계속 다녔습니다. 저는 이 시기부터 허리 통증과 두통에 시달리면서 이삿짐 일을 나가지 못했고, 반짝이님 공공근로를 따라 다니면서 일을 도왔습니다. 공공근로는 2년 일하면 1년을 쉬어야 합니다. 쉬는 기간은 실업급여와 장애 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5개월의 실업급여마저 끝나면 장애 연금으로만 6개월 이상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5년 부암동 주민센터에서 첫 수급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반짝이님과 장모님이 계속 연락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했고, 장모님과 통화해서 재산과 소득을 물어보면 수급 신청이 더 쉽다고 공무원이 장모님과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장모님과 통화가 싫었던 반짝이님이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공무원은 부양의무자인 어머니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기 위해 통화를 했고, 어머니의 재산과 소득이 높아서 수급 신청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다시 공공근로 일하기 전까지 6개월 이상을 30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 막막했지만 방법은 없었습니다. 2017년 6월, 일을 쉬어야 하는 시기가 왔을 때 다시 수급 신청을 했지만, 부양의무자 재산과 소득 기준 때문에 두 번째 탈락했습니다. 2년 주기로 빈곤이 찾아왔습니다. 2019년도는 탈락할 것 같아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고 장모님이나 오빠들이 돈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나 야학에서 대출을 받아 살아냈습니다.

작년 상반기 공공근로가 끝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180일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 이상을 버틸 자신이 없어서 결국, 수급 신청을 하게 되었고, 오랜 기다림 끝에 생계와 주거급여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시름 놓긴 했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에 가로막혔습니다. 허리와 두통, 안과, 팔이 아파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매번 다음 급여를 받으면 가야지 다짐만 합니다.

## 20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반짝이]

엄마의 재산이나 소득은 우리 집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끔 죽었나 살았나 안부 정도만 전화통화로 하고 있습니다. 엄마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좋은 해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표 3.

## 근로능력평가와 자활사업 참여경험

조건부수급자로 일하는 차00입니다.

어느 날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좀 컸어요. 허리 어디를 잘못 건드렸는지 수술 이후에 허리를 영 못 쓰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던 일은 도매 정육점에서 고기 가는 일이었는데 그 뒤로는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생활이 안 좋아지고, 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수급신청을 할 때는 걸음으로 멀쩡해보이는데 수급신청을 왜 하냐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배에 있는 큰 수술자국을 보여준 이후에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자활사업에 참여하다가 몸이 더 안 좋아진 지금은 근로유지형 자활에 참여합니다. 동네 청소를 하는 일입니다. 일을 하는 것은 좋고 보람있지만, 문제점도 너무 많습니다.

첫째. 임금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도 일을 하는 것인데 한 달 백오십만원도 되지 않는 돈으로 생활하는 것은 버겁습니다. 지금은 자활사업 참여비와 급여를 합해 대강 백 오만원 언저리가 됩니다.

둘째. 일 하는 사람으로서 보람이나 여유를 느낄 수 없는 제도 운영이 답답합니다. 노동자로 일할 때는 휴가도 있고, 작업복도 있습니다. 자활사업에는 휴가도 없고, 요즘에는 조끼 하나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안전화라도 지급했는데 요즘엔 안전화도 없이 일주일에 칠십, 팔십 봉지씩 쓰레기를 치웁니다.

셋째. 내년이면 나이가 65세 넘어간다고 자활사업을 그만두고 일반수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백만원을 벌지만, 일반수급자가 되면 월세 내고 나면 오십팔만원 수급비만으로 생활을 꾸려야 합니다. 지금은 일반수급자보다 약 이십

만원 한달 별이가 낮고, 근로장려금을 받습니다. 생일이 지나면 근로장려금도 못 받고, 급여도 낮아지는 셈입니다. 그때부터는 사는 의미가 참 없을 것 같습니다. 자활 일자리가 바로 바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 이웃 주민은 이사를 갔다가 참여하던 일자리에 자리가 없다고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곧 수급에서 탈락할 것 같다고 불안해 했습니다. 동네마다 일자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차이가 납니다. 일이 없을 때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수급비가 낮아져서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면 사람들은 절망을 느낍니다.

일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보람을 느끼는 일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급자라 하여도 일하는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 뿐만 아니라 수급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수급비가 나와도 방세 삼십 몇 만원을 내고 나면 오십오만원정도로 한달을 삽니다. 제가 사는 동자동의 경우 도시락 등 오니까 괜찮지만, 다른 동네로 가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수급비로 반찬 사먹고 생활을 하기 턱없이 부족합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이런 저런 생필품을 사는 것만으로 5만원이 금방 찹니다.

이렇게 수급비가 낮다보니 사람들은 새로운 취지를 가질 생각도 못 합니다. 당뇨가 있어 몸이 아픈 사람이라 하더라도 몸이라도 좀 움직일 수 있으면 덜 아플 텐데 외출이라도 해서 돈을 쓰면 한 달 살림이 안 되니까 그냥 방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경마장에 다니고 이렇게 나라에서는 나쁘다고 하지만 여름에 시원하니까 거기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을 조금 해서라도 부족한 수급비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노동을 한 사람이 다녀왔다 하면 고스란히 수급비에서 깎입니다.1) 보통 수급자들은 몸이 아프다보니 일을 한다고 해도 오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괜히 일 했다가 수급에서 탈락하는 것보다 안 하는게 낫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의 돈은 벌어도 수급에서 안 깎는다고 정해주면 할 수 있는 만큼 의욕을 내

---

1) 편집자 주: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비율 30%가 도입되었지만 30%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삭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변화에 대한 체감은 낮다.



서 일 하고 삶에 활기도 생길텐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게 안타깝습니다. 수급자는 딱 일 하면 안 되고, 일 할거면 수급에서 떨어진다고 하니까 수급자들은 수급을 탈출할 길이 없는 셈입니다. 몸이 아프니까 긴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두어시간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수급자 중에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어떤 분은 공무원이 오라는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안 가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당하고 살다보니 제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만나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나눌 거다 상세하게 알려주면 도움이 될텐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수급자들은 자활이나 수급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뒤에서만 많이들 이야기하지 앞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칼자루 권 사람에게 얘기해야 뭐가 변하는 거라고, 뒤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앞에서 얘기해야 개선된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뒤에서만 끄끙대지말고, 우리끼리만 말하지 말고 앞에서 같이 얘기해야 합니다.

얼마 전 주민센터에 갔다가 서울시가 시행하는 저소득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보았습니다.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도 해당하나 싶어 물어봤는데, 수급자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소득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휴가비는 없기가 마찬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수급자들은 이런 제도들에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게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실망이 됩니다. 한국의 제도는 큰 틀만 보지 작은 틀을 못 보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들을 진짜 살게하는게 뭐가, 그걸 보는 제도가 되어야 수급자들이 쳇바퀴 돌 듯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표 4.**

## 치료 중 의료급여 비급여 항목의 부담

박누리 || 노들장애인야학

안녕하세요. 노들장애인야학에서 활동하는 대추입니다.

제가 활동하는 노들장애인야학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교육조차도 받지 못했던 설움과 차별을 메우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그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로 차별받아온 학생분들은 차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주시설에서 살다가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자립 생활을 하며 야학에 다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자립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수급비로 생계를 꾸려나가게 됩니다. 신체장애가 중중이신 여러 학생분들은 비장애인보다 신체 곳곳 관절의 통증이나 근육의 경직 등이 심해 병원을 다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을 가시게 되면 보통 의료급여를 적용받아 최소한의 병원비를 내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수급비만으로도 어느정도 생계를 꾸려 가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사진은 노들장애인야학의 학생회장을 맡고있는 장애경 학생입니다. 애경님은 거주시설에서 사시다가 시설의 만행에 더이상 시설에서 살기 싫다며 시설에서 도망쳐 나오는 과정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을 만나 탈시설 하시게 되고 현재는 지역사회에서 아주 자유롭게 자립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애경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왼쪽 손이었습니다. 애경학생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붕대가

아닌 집에서 못쓰는 천으로 칭칭 감겨져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처음 본 저는 걱정한 마음이 들어 손가락은 왜 이렇게 감아 놓으셨냐고 애경님께 질문했고 애경님은 아파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경님께 다치셨는데 혹시나 붕대를 못 사서 이렇게 감아 놓으신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혹시 이렇게 감아 놓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라고 여쭙보았고 손가락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애경학생이 손가락을 이렇게 붕대로 칭칭 감은 이유는 장애로 인해 손가락 근육 강직이 심해지면 손이 떨리는 증상과 함께 손가락과 손가락이 부딪히고 그러면서 다른 손에 비해 짧은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들을 심하게 압박하면서 상처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감아 놓으면 좀 괜찮아지는 거냐는 물음에는 안 감았을 때보다 훨씬 낫고 붕대보다는 이렇게 천 재질이 손가락을 훨씬 더 잘 보호해 주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손이 떨리고 상처가 심해지면 근육의 경직이 심해져서 힘들고 또 사람들이 떨리는 손과 붕대에 관심이 쏠려서 더욱 손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 손이 더 떨리고 손가락이 서로 부딪혀서 상처 낼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 후 애경학생의 손에 칭칭 감겨진 천이 많이 얇아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이 많이 훌쩍해진거 같은데 어떻게 된거냐? 라고 물었을 때 좋은 소식과 안좋은 소식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 애경님의 손가락 강직이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 보톡스가 근육에 작용해 애경님이 힘들어하던 증상이 많이 좋아진다는 것이었고 안 좋은 소식은 이 보톡스 주사가 비급여여서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보톡스 주사는 보통 한 병에 20만원 하는데 애경님의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이 주사를 2병 정도 맞아야 하고 그러면 애경님은 이 증상 완화를 위해 한 번에 40만원의 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애경학생은 앞에서 말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생계급여와 장애연금이 나와 두 가지를 합쳐서 90여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한 달 생계를 꾸리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보톡스 주사를 맞게 되면 그달은 총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돈으로만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 보톡스 주사를 맞지 않게 된다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니 선택의 여지 없이 이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 미용을 위해서 보톡스를 맞는 것도 아니고 정말 불가피하게 보톡스를 맞아야 하는 상황에 보톡스 주사가 비급여가 되니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 26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그리고 최근 들어는 이 증상이 심해져서 보통 2병 맞던 주사를 3병을 맞아야 이전만큼의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번 보톡스를 맞는데 60여만원의 돈이 들고 그렇게 되면 주사를 맞은 달에는 전 달에 30%밖에 안되는 3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가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나이가 더 들고 몸이 더 안 좋아지면 이 보톡스 주사의 양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다 어찌면 애경님은 한 달 수급비를 모두 보톡스 주사를 맞는데 써버리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 싶어 걱정이 아주 크신 상황입니다.

이렇게 의료급여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항목에서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인 경향성을 기준으로 비급여 항목을 선정하고 필요한 개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진 않는 현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는 것인 만큼 그에 맞게 고통없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생계를 고민하지 않게 기준과 체계 개선이 시급합니다.

## 발표 4.

## 적은 수급비가 침해하는 권리

임기현 || 부산반빈곤센터

이번 가계부 조사를 하면서 만났던 주민은 부산에서 '내미는마음'이라는 홀로 사시는 주민 모임의 회원이시며 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평소에 모임에도 늘 성실하게 참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처음에는 이 분들이 2개월 동안 빠짐없이 가계부 작성을 잘 해주실까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을 지나면서 그것은 나 혼자만의 쓸데없는 걱정엔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하루도 빠짐없이 가계부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시작할 때 가계부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중간에 한 번씩 찾아가서 점검하는 동안에 이 두 분의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가계부 작성 활동에 놀랐습니다. 무엇이 도움이 되었길래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가계부 작성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가계부 작성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돈의 수입, 지출 상황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마음과 관심사와 일상 모습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평소에 주민들과 가깝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피상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 분은 반려견 2마리를 키우시는데 사료와 간식구입비로 많이 지출하고 계셨습니다.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이 분의 삶에 반려견은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한 가족이었기에 당연히 이 부분에 지출이 많았던 것입니다. 가계부를 쓰면서 사료값보다는 간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셨고, 하루 생활을 돌아보며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았다는 말씀과 혹시 빠진 게 없는지 애써 기억해야하는데 이것조차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만 구체적으로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들어오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산 시내에 일정한 코스를 정해놓고 걷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리가 아파서 계속 걸을 수 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이 분은 생활용품에 관심이 많으셔서 생활용품 구입에 지출을 많이 하셨는데 한 편으로는 좀 과하게 지출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줄여가자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쉽게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가계부 작성 중간 점검을 하면서 잘못 기입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어서 그냥 영화 한 편 정도 보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영화 보기, 전시회 관람 등 문화생활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늘 가시는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외에도 더 좋은 전시장과 미술관을 소개드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하루 종일 일상을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걸으면서 무거운 배낭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왜 그 잡다한 물건들을 들고 다니시는 주민들의 속마음과 성격을 알 수 있었으며, 자갈치 시장 근처에 반려견 사료와 간식을 싸게 파는 가게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가격이 가장 싼 곳이 이 분들의 단골집이었습니다. 알뜰하게 살림을 사는 ‘지혜로운 습관’으로 이런 곳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생계비 지원금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쩔 수 없는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가계부 아래쪽에 한 두 줄 짧게 적혀있었던 글 속에 이 분들이 평소에 느끼는 감정과 걱정하는 것 그리고 삶에 어떤 변화를 바라는지 어렵듯이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를 써고 있다는 것을 단 한 줄을 문장을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하루 이틀 빼고는 항상 비어있는 가계부 수입칸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실제로는 ‘3인 가구’가 된 주민의 외롭지 않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픈 다리 때문에 계속해서 걸을 수 밖에 없으며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기기 위해서는 생계비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딱히 대출을 할 수도 없고 쉽게 돈을 빌릴 수도 없는 여건에 계신 분들이기에 생계비 현실화는 더욱 절실합니다. 매달 적자 또는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애써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7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생계비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점심식사는 5~6천원 정도로 해결해야하고, 술을 먹더라도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밖에서 마시지 않고 집에서 마셔야한다는 말씀에 현실적인 생계비 상향 조정이 왜 필요한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축의 필요성은 모두 알고 계시지만 이런 빠듯한 상황에서 저축을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나라는 질문에, 눈이 좋지 않아서 좋은 안경을 맞춰야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과 귀가 들리지 않아서 보청기를 사용해야하는데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은 품질이 떨어져서 추가로 돈을 주고 맞추고 싶은데 가격이 비싸서 너무 큰 부담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께서는 역시 사료, 간식, 미용, 동물병원비 등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힘 들어하셨습니다. 이 분들의 한숨과 걱정스러움을 견어내야만 한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될 것입니다. 그것은 생계비를 현실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가계부 작성 활동을 통해서 수입, 지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처해있는 삶의 현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해야하는지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속해있는 ‘세계 읽기’의 시간이었고 이를 통한 성찰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계부 작성을 마친 뒤에도 계속 이어서 작성하시고 싶어 하셔서 한 권씩 더 제본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주민모임에 함께 하시는 다른 분에게 소개했더니 그 분도 가계부 작성을 이전 두 분보다 더 잘 하고 계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계부 작성 활동이 생계비의 현실화를 위한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가)가계부 자조모임 또는 가계부 학교’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낼 수 있는 ‘주민의 힘’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자료**

# 상담 사례로 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며,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다. 이듬해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8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다.

### 1)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총 (중복제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2,408,362	1,532,616	1,435,138	2,215,427	299,988

[표 24] 2022년 5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사회보장통계)

### 2) 선정기준

#### (1)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2022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생계급여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급여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주거급여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교육급여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 (2)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의 특성별 기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률]
- 재산의 소득환산율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근로능력 자가구	의료급여	5,400	3,400	2,900
	생계주거 교육급여	6,900	4,200	3,500
	의료급여	8,500	6,500	6,000
근로무능 력자가구	생계주거 교육급여	10,000	7,300	6,600
	부양의무자가구	22,800	13,600	10,150

[표 26] 기본재산 공제액 (단위 : 만원)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수급(권)자	1.04%	4.17%	6.26%	100%
부양의무자	1.04%		2.08	

[표 27] 재산의 소득환산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의료급여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생계주거교육급여	1.2억원	9,000만원	5,200만원

[표 28] 주거용재산 소득환산 적용 한도액

※일반재산으로 보는 자동차 (월 4.17%로 환산하는 차)

①(생계·의료) 차령 10년 이상 1600cc이하의 승용차 /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가액 200만원 미

32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만인 승용차 (주거·교육) 차령 10년 이상 2000cc미만의 승용차 /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가액 500만원 미만의 승용차/ ②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③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 ④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2500cc미만 자동차 / 2000cc미만 장애인 소유 자동차/ ⑤16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소유의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가 있는 부양의무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경우 산정 제외, 그 외에는 일반재산 환산율

**(3) 부양의무자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 가구의 (환산)소득이 가구당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때 그 차액을 보충해주는 기본 원리를 갖고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을 통해 가족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때는 제외한다. 부양의무자로부터 1차적 부양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부양의무자는 1촌 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사망한 1촌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즉, 부모와 자녀, 그들의 현재 배우자는 모두 부양의무자에 포함된다. 형제자매와 조부모, 손주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없을 시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권을 보장받는다. 이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참고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부양능력있음: 수급자로 보장불가

가구요건	내용
-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양쪽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가구에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수급신청자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생계급여 수급신청가구 전체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 월 834만 원 이하 / 재산 9억 이하)

## 2. 사례로 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 1) 신청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 (1)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잘못된 안내

사례1. 활동가와 함께 수급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A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의 존재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주민센터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한데 제출할 수 있는지 A씨에게 질문. 동행한 활동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부모님이 65세 이상한 것을 확인, 기초연금 수급중이신지 전산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없음을 알림. 이후에도 주민센터는 ‘그런 경우 의료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생계급여 신청은 불가’ 하다며 잘못된 정보를 안내함. 59년생 B씨의 경우 부양의무자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요청받음. 연락처가 없어 알아낸 끝에 이복여동생을 통해 어머니가 요양시설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됨. 결국 동생의 도움을 받아 병든 어머니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았지만 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아픈 노모를 보살피지는 못할망정 부양의무를 포기해달라고 부탁하는 면구스러움

을 느낄 수 밖에 없었음.

- 위 사례처럼 초기상담에서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안내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음. B씨의 경우 어렵게 어머니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제출했지만 사실 해당 서류가 신청에 전혀 필요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느끼지 않아도 되었을 모멸감에 더불어 시간마저 소요한 것.
-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통해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장애인, 노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지 않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만 신청단계에서 일괄 부양의무자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함. 여러 가지 서류를 ‘일단 제출하고 보자’는 식의 상담은 수급진입을 막는 장벽이 됨.

## (2) 초기상담 질의 차이

사례2. 일용직 노동을 해왔으나 뇌전증이 발생해 일을 하지 못하고, 살던 여인숙에서도 방을 뺀 C씨.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 활동가와 주민센터를 찾았음. 점심시간이라 주민센터가 다소 혼잡한 상황이었는데 상담실이 아닌 창구에서 “최근 3개월 동안 돈 버신적 한번도 없다는 거죠?” 라며 재차 질문. C씨는 동행한 활동가에게 공개적으로 질문 받는게 수모스러워 수급을 신청하지 않고 싶다는 의사를 전함.

- 이와 반대로 ‘처음 만났던 담당공무원 덕에 살았다’고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음. 이처럼 전담공무원의 역량차이, 해당 주민센터의 관행에 따라 초기상담의 내용과 질이 상이함. 가장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이 무척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데에서 기인함. 그러나 22년 운영한 제도인 만큼 최소한 초기상담의 응대 내용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 선정기준의 문제

### (1) 까다로운 재산기준, 현재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식별하지 못해

○재산이 있으나 소득이 없는 이들의 상황을 포착하지 못하는 제도

사례3. 지난 4월 서울시 동대문구 창신동에서 사망한지 한달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 모자의 시신 발견됨. 이들은 1930년대에 지어진 낡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해당 집의 공시지가가 1억 7천만원이라 이들 모자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을 경우 재산의 환산소득액은 생계, 주거급여 신청시 261만원, 의료급여 신청시 339만원에 이룸. 이들 모자는 지난 1월달까지도 주민센터에 방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였지만 제도적 지원 방안 없었음. 사망한 이들의 집 문 앞에는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체납 고지서가 붙어 있었음. 지난 15일 서대문구 한 건물 2층에 살던 건물주 노인의 경우에도 수년간 쌓인 채무에 상당지분이 저당잡혀 있었음. 건강보험과 각종 세금이 압류상태였지만 복지사각지대로 포착되지 않음.

- 최근 연달아 발생한 두 죽음은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때문에 복지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이들이었다는 공통점 있음. 자산을 처분하지 않은(못한) 이유는 무척 다양할 것임. 마지막 남은 자산을 최고점에 교환해야 한다는 생각, 처분을 해봤자 오히려 주거안정만 떨어질 수 있는 상황, 오랜 빈곤으로 얻은 심리 사회적 외상이 이 모든 과정을 밟아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등 다양한 원인을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런 복합적인 상황 아래서 발생하는 빈곤문제를 포착하기에 유연성이 떨어짐. 그러나 이들의 문제를 빈곤으로 파악하지 않을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기 어려울 것. 사회보장제도가 미발달한 사이 자산축적은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유일한 노후안전망으로 인식되어 왔음. 노후소득안정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는 동안 위와 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빈곤의 범주로 보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재산기준 완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사례4. 경기도에 사는 D씨는 공시지가 6800만원의 자가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였음. 최근 땅값 상승으로 인해 갑자기 공시지가가 9000만원이 넘어버림. 이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할까봐 두렵고 걱정됨.

- D씨의 경우 재산가액만 상승한 경우 3년간 재산범위 특례자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었음. 하지만 이는 특례에 불과해 3년 뒤의 대책이 필요함. 3년이 지난 뒤라고 해도 D씨에게 뾰족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특례가 아니라 근본

적인 대책이 필요함.

○재산기준 및 근로소득공제 의료급여 제외.

사례5. E씨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의료급여는 보장받지 못하고, 생계주거급여만 받고 있음. 매달 1만1천원의 건강보험료에 더해 과거 체납된 보험료를 분할상환하느라 한 달 총 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병원에 가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워 정작 병원 이용은 하지 않고 있음.

- 2020년 재산기준 완화, 근로소득공제를 도입했지만 의료급여에서 이 모든 변화는 제외되었음. 이로 인해 수급자선정기준이 한층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부양의무자기준 역시 다른 급여에 비해 가장 느린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 기존 부양의무자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 부양의무자기준이나 소득, 재산 공제액의 차이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한 이들의 생활수준,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사적이전 수준은 의료급여자와 전혀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열악할 가능성이 큼. 병원이용이 필요한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가 가장 중요한 급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겪는 박탈은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함.

- 보건복지부는 2020년 총괄생계소위에서 이에 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구두로 밝힌바 있으나 이행되지 않았음.

## (2) 가족관계 해체를 ‘단절 기간’ 으로 파악하려는 행정 지속되고 있음

사례5. 수급신청을 간 F씨에게 전담공무원은 1-2년 내 가족과 연락하셨으면 가족관계 단절로 인정받지 못한다, 최소한 5년 10년 연락을 안 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안내를 받음.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이전에도 가족관계 해체에 따른 부양 거부, 기피에 대한 판정은 단절 기간이 아닌 가족 기능의 해체로 판단하도록 하였음(2015년 지침개정). 단순한 전화연락이나 만남만으로 엄격하게 가족관계를 파악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0년 이상 연락하지 않은 사람들만 가족관계

해체를 인정할 수 있다, 부양거부기피 심사대상에 포함된다는 식의 안내를 하고 있음.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오히려 거부기피 사유에 대한 인정은 후퇴할 가능성이 있으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도달해야할 바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함.

(3) 엄격한 소득기준으로 인한 문제

사례6. G씨는 기초연금이 인상되며 소득인정액이 5만원 초과된다고 의료급여에서 탈락 후 주거급여만 받고 있음. 기초연금을 10만원 더 올린다는 대통령 후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득이 늘어나도 감당할 수 없는 의료, 주거비를 생각하며 압담함을 느낌.

- 기초연금의 경우 여전히 소득인정액에서 100% 산입되는 소득의 영역임. G씨의 경우처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으며 도리어 수급에서 탈락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음. 엄격한 소득환산방식은 단 100원의 차이로도 급여보장의 당락을 가르는데, 이는 소득차이에 따른 형평성을 보장한다기 보다 제도 모순을 극대화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납득 가능한 선정기준, 유연한 제도운영과 더불어 사회전체의 복지총량 증대가 필요하다.

### 3) 수급자가 되어도 수급자로 살기가 어려워: 주거급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관한 문제는 증언대회와 토론회 조사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로 요약함.

○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생계, 의료급여 이하인 사람들에 대한 조사 필요

사례7. 2020년 12월 방배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김모씨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생계, 의료급여는 신청하지 않은 주거급여 수급자였음. 2019년 망우동에서 사망한채 발견된 모녀 중 어머니는 기초연금 수급자였으며, 2019년 인천에서 함께 목숨을 끊은 한부모가족도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였음.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2019년 빈곤층의 연이은 사망 이후 주거급여 및 일부급여만 받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조사결과를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다

른 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를 사각지대로 보고 우선 보장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음. 보건복지부는 관련한 자료가 없다고 회신. 빈곤층의 죽음 후 일제조사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수급자이지만 실제 필요에 미달하는 수준의 급여만 보장받는 수급자에 대한 재조사, 선보장조치가 절실함.

○개발지역 주거급여 세입자 이전대책에 대한 조사 및 지원 필요

위 사례7에 언급한 방배동 김모씨는 재개발지역 세입자이기도 했음. 지역이 재개발될 때 인근 집값이 올라 이사 갈 방도가 여의치 않고, 이주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병환을 얻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재개발 지역에 있는 수급자에 대한 주거보장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주거급여전달체계의 역할 중 하나가 되어야 함. 주거급여의 목표는 단지 주거비 보조사 아니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주거급여법 제1조)이기 때문임.

○들쭉날쭉 주거급여, 주거 상향을 위한 상담은 어디에

사례8. 시각장애가 있는 H씨는 나이가 들수록 갑작스러운 의료비를 지출할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느끼며, 월세를 줄여 돈을 모아보기로 결심함. 원래 살던 월세 25만원 주택을 나와 월세 10만원의 창문이 없는 지하주택으로 이사함. 이후 주거급여가 절약한 월세만큼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황망함을 느낌. 옆친데 댁친격으로 장마 때문에 가지고 있던 살림살이에 곰팡이가 피거나 못쓰게 되어 생활이 큰 어려움에 빠짐.

주거급여 수급자가 이사를 하면 주택조사원이 조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기준임대료의 60%가 임의로 지급됨. 이후 실제 결정된 주거급여 액수가 기준임대료 60% 이상일때는 소급지급하지만, 60% 미만일 때는 오히려 주거급여를 차감하는 형태로 기지급한 급여를 환수함. 이런 내용은 자세하게 안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들은 이사 후 수급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거나, 이사를 마친 후 갑자기 더 받은 급여가 있다며 급여를 깎아 황당함을 느낌. 국토교통부는 어차피 총액이 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듯하나 이는 수급자들의 한달 살림살이에서 1만원, 2만원의 변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것임.

더불어 H씨의 경우 좀 더 절약을 해 미래를 대비하려던 시도가 더 큰 좌절로 돌아온 상황임. 이 과정에서 주거급여의 작동방식을 잘 알려주거나, 이사를 할 때



상의할 사람이 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되는 피해를 입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상담을 할 기관과 사람이 없다면 복지제도에 미달함.

○자기부담금 실효성 점검 필요

사례9. (2021년 기준) 고시원에 사는 I씨는 국민연금으로 72만 7천원을 받는다. 이 때문에 주거급여 자기부담금 30%가 발생해 한 달 주거급여는 원래 고시원비인 20만원이 아니라 14만 6천원을 받는다.

생계급여 이상의 소득인정액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준중위소득 30%(생계급여 기준선) 차액의 30%를 자기부담금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부담금이 부과되는 수급자의 삶은 수급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기부담금을 통해서 합산 총소득의 차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도 순리적인지, 주거안정과 상향 및 탈빈곤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해보아야 한다.

## 40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토론회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발제1** 가계부조사 결과 분석

김준희 |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발제2** 가계부조사 참여자 인터뷰 및 활동가 FGI를 토대로 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성철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토론1**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변호사 박영아

**토론2** 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박사

**토론3**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이용재교수

**토론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42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 발제1.

## 가계부조사 결과 분석

김준희 ||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1. 조사 개요

-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받는 25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부조사를 실시함
- 조사 기간은 2022년 2월 18일~4월 19일까지이고, 매일 수입과 지출내역, 식단 및 식사방법 등을 기록함
  - 가계부조사 대상 가구를 제외한 담당 활동가가 월 1회 이상 가구를 방문하여 점검함
- 조사를 마친 가계부는 엑셀에 입력하고, 부정확한 내용이나 누락된 항목은 재조사하여 보완함
  - 임대료, 휴대폰 요금 등 매월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 누락된 경우 확인함

표 34. 2022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계급여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자료 :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44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 조사 참여가구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서울 15가구, 대구 5가구, 부산 3가구, 충북 2가구가 참여함
  - 1인 가구 22가구, 2인 가구(부부) 1가구, 3인 가구(부부+자녀) 1가구, 4인 가구(조모+모+자녀2) 1가구임
    - ※사례14는 형과 동거하고 있지만 가계부 기록을 1인가구 기준으로 하여 단독가구로 구분함
  - 공공임대 20가구, 민간임대 5가구임.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 10가구, 영구임대주택 3가구, 전세임대주택 3가구, SH재개발임대주택 3가구, 국민임대주택 1가구임. 민간임대주택은 단독·다가구 3가구, 아파트 2가구임
  - 전세임대주택을 제외한 22가구의 점유형태는 모두 보증부 월세임 주택면적은 최소 4평에서 최대 29평까지 분포함
  - 에어컨이 있는 가구는 13가구, 없는 가구는 12가구임
  -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가구는 21가구, 안 받는 가구는 4가구임
  - 관리비가 별도로 부과되는 가구는 21가구, 부과되지 않는 가구는 4가구임
  - 가구주 성별은 남성 18명, 여성 7명임
  - 가구주 연령은 30대 2명, 40대 7명, 50대, 4명, 60대 5명, 70대 7명임
  - 가구주 기준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6명,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명임. 장애유형은 지체 5명, 뇌병변 3명, 지적 3명, 시각, 청각, 언어 각각 1명임
  - 가구주 기준으로 주요 만성질환은 디스크, 고혈압, 당뇨, 치과질환 등임
  - 금융 채무가 있는 가구는 12가구, 없는 가구 12가구임

표 35. 참여가구 특성

구분	지역	가구유형	연령(세)	장애	만성질환	주거								채무
						임대유형	주택유형	방수(개)	평수(평)	월 임대료(원)	에어컨	관리비	에너지바우처	
1	서울	단독	44	-	당뇨, 모야모야병	공공	매입임대	1	6.0	107,290	○		○	○
2	서울	단독	62	지체(경)	디스크	공공	영구임대	2	7.5	37,500		○	○	
3	서울	단독	71	시각(경)	관절염	공공	매입임대	1	5.4	121,000	○	○	○	
4	서울	단독	36	-	위장병, 정신질환, 안질환, 뇌전증	공공	매입임대	2	10.7	76,390		○		○
5	서울	단독	70	-	치과질환	공공	영구임대	2	7.8	56,920		○		○
6	서울	단독	64	지체(경)	혈압, 당뇨, 디스크, 정신질환, 치과질환	공공	매입임대	1	14.0	194,700		○	○	
7	서울	단독	62	-	혈압, 당뇨, 고지혈증	공공	SH재개발임대	2	11.0	70,900		○		
8	서울	단독	56	뇌병변(중)	관절염, 위장병	공공	SH재개발임대	1	10.3	242,500		○	○	
9	서울	단독	54	-	위장병, 정신질환, 치과질환	공공	SH전세임대	2	15.0	300,000		○	○	○
10	서울	단독	63	-	혈압, 당뇨, 호흡기질환, 치과질환	민간	단독·다가구	1	4.0	310,000	○		○	○
11	서울	조모+모+자녀(4)	44	-	신장질환	공공	전세임대	3	15.0	450,000			○	○
12	서울	단독	72	-	관절염, 디스크	민간	단독·다가구	1	5.0	220,000			○	○
13	서울	단독	43	-	간질환, 혈압, 고지혈증	공공	매입임대	2	15.0	213,160	○	○	○	○
14	서울	단독	34	지적(경)	당뇨, 안질환	공공	매입임대	2	16.0	227,980		○	○	
15	서울	부부(2)	72	-	심장질환, 중풍	공공	SH재개발임대	2	12.0	179,400		○	○	○
16	부산	단독	71	-	당뇨, 비노기질환	민간	단독·다가구	3	12.0	200,000	○	○	○	
17	부산	단독	67	지체(경)	알콜, 허리통증	공공	매입임대	2	11.0	61,860		○	○	
18	부산	단독	71	청각(경)	허리통증, 피부질환	공공	매입임대	2	11.0	48,530	○	○	○	○
19	대구	단독	41	-	혈압, 디스크	공공	매입임대	2	18.0	230,800	○	○	○	○
20	대구	단독	75	-	혈압, 디스크	공공	매입임대	1	18.0	150,500	○	○	○	○
21	대구	단독	48	뇌병변(중)	디스크	공공	영구임대	2	12.0	108,820	○	○	○	
22	대구	단독	46	뇌병변(중)	-	공공	국민임대	2	17.0	108,000	○	○	○	
23	대구	부부+자녀(3)	50	-	혈압, 디스크	공공	LH전세임대	3	29.0	200,000	○			
24	충북	단독	50	지체(중)	치과질환	민간	아파트	2	16.0	300,000	○	○	○	
25	충북	단독	40	지체(중)	-	민간	아파트	2	16.0	300,000	○	○	○	

자료: 2022년 가계부조사.

주1: 가구유형의 괄호 안 숫자는 가구원 수임.

주2: 연령, 장애, 만성질환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함.

주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경),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중)으로 기재함.

## 2. 주요 조사 결과

### 1) 2022년 가계부조사 주요 결과

#### □ 가계수지

- 2022년 3월 18일 ~ 4월 19일 동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월평균으로 분석함
- 채무를 제외한 경상소득, 저축 및 적금을 제외한 지출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가계수지는 다음과 같음
- 수입을 초과해서 지출한 가구는 총 11가구로 월평균 최소 32,699원부터 최대 2,447,102원까지 초과 지출함
  - 사례21을 제외한 1인가구의 평균 수입은 865,858원, 지출은 817,844원이고, 수지는 48,015원임
-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 1순위가 식비인 가구는 10가구, 임대료·관리비·수도광열비를 포함한 주거비는 10가구임(부록 1 참조)
  -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 2순위가 식비인 가구는 10가구, 주거비는 7가구임
- 전체 지출에서 식비와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55.7%임



표 36. 가계수지

(단위: 원)

구분	지역	가구유형	생계·주거급여 외 수입원	수입	지출	수지
사례1	서울	단독	민간지원	740,525	578,810	161,715
사례2	서울	단독	장애수당	663,320	635,130	28,190
사례3	서울	단독	장애수당	745,190	442,907	302,284
사례4	서울	단독	-	661,560	612,140	49,420
사례5	서울	단독	기초연금	643,190	728,366	-85,176
사례6	서울	단독	근로소득	1,107,310	654,955	452,355
사례7	서울	단독	근로소득	1,096,470	893,475	202,995
사례8	서울	단독	장애연금	1,140,200	1,322,858	-182,658
사례9	서울	단독	-	910,444	846,720	63,724
사례10	서울	단독	-	890,850	835,210	55,640
사례11	서울	조모+모+ 자녀(4)	교육급여	1,405,370	2,475,756	-1,070,386
사례12	서울	단독	기초연금·국민연금	885,600	1,090,000	-204,400
사례13	서울	단독	-	799,800	684,350	115,450
사례14	서울	단독	-	810,620	636,675	173,945
사례15	서울	부부(2)	-	813,400	875,479	-62,079
사례16	부산	단독	기초연금·국민연금	784,450	850,270	-65,820
사례17	부산	단독	장애수당	688,010	813,711	-125,701
사례18	부산	단독	기초연금·장애수당	679,320	712,019	-32,699
사례19	대구	단독	-	781,850	917,458	-135,608
사례20	대구	단독	기초연금	725,935	946,600	-220,665
사례21	대구	단독	장애연금·민간지원	1,204,360	3,651,462	-2,447,102
사례22	대구	단독	장애연금	1,182,640	775,320	407,320
사례23	대구	부부+자 녀(3)	-	1,521,210	1,462,780	58,430
사례24	충북	단독	장애연금	1,111,790	1,073,580	38,210
사례25	충북	단독	장애연금	1,133,950	1,124,165	9,785
1인 가구 평균				865,858	817,844	48,015

자료: 2022년 가계부조사.

주: 가계수지가 마이너스인 가구는 음영 표시함.

## 48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 □ 주거비

-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음
  - 서울 거주 1인 가구는 최대 327,000원을 받을 수 있음

표 37.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자료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48호. 주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함(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표 38. 2022년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자료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48호.

주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함(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조사대상 가구는 모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주거급여액을 초과해 임대료를 부담하는 가구는 3가구임
- 주거급여에서 임대료·관리비·수도광열비를 포함한 주거비를 제외하면 최소 8,850원부터 최대 350,005원까지 자부담이 있음
  - 주거급여로 임대료, 관리비, 수도광열비를 충당하는 가구는 3가구임
-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가 11가구임
  - 민간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주거비 부담이 큰 경향을 보임

표 39. 주거비 부담

(단위: 원, %)

구분	지역	가구 유형	임대 유형	주택 유형	보증금	월 임대료(a)	월평균 관리비·수도광열비(b)	주거급여(c)	주거급여-임대료(c-a)	주거급여-주거비(c-a-b)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
사례1	1급지	단독	공공	매입 임대	2,781,000	107,290	2,180	109,675	2,385	205	14.8	○
사례2	1급지	단독	공공	영구 임대	1,500,000	37,400	52,870	42,470	5,070	-47,800	13.6	○
사례3	1급지	단독	공공	매입 임대	1,000,000	121,000	20,614	124,340	3,340	-17,274	19.0	○
사례4	1급지	단독	공공	매입 임대	514,000	76,390	10,570	78,110	1,720	- 8,850	13.1	
사례5	1급지	단독	공공	영구 임대	1,600,000	56,920	89,440	58,590	1,670	-87,770	22.8	
사례6	1급지	단독	공공	매입 임대	537,000	194,700	100,775	196,670	1,970	-98,805	26.7	○
사례7	1급지	단독	공공	SH재 개발 임대	35,880,000	70,800	80,405	190,400	11,9600	39,195	13.8	
사례8	1급지	단독	공공	SH재 개발 임대	29,275,000	242,500	245,315	327,000	84,500	-160,815	42.8	○
사례9	1급지	단독	공공	SH전 세입	90,000,000	300,000	73,475	327,000	27,000	-46,475	41.0	○

## 50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사례 10	1급지	단독	민간	대 단독· 다가 구	1,000,000	310,000	40,000	310,000	-	-40,000	39.3	○
사례 11	1급지	조모 +모 +자 녀 (4)	공공	전세 임대	20,000,000	450,000	113,420	471,040	21,040	-92,380	40.1	○
사례 12	1급지	단독	민간	단독· 다가 구	3,000,000	280,000	34,700	296,600	16,600	-18,100	35.5	○
사례 13	1급지	단독	공공	매입 임대	537,000	213,160	31,830	214,950	1,790	-30,040	30.6	○
사례 14	1급지	단독	공공	매입 임대	537,000	227,980	26,080	229,770	1,790	-24,290	31.3	○
사례 15	1급지	부부 (2)	공공	SH재 개발 임대	15,120,000	179,400	81,425	229,400	50,000	-31,425	32.1	○
사례 16	3급지	단독	민간	단독· 다가 구	20,000,000	200,000	16,355	201,000	1,000	-15,355	27.6	○
사례 17	3급지	단독	공공	매입 임대	1,000,000	61,860	22,051	65,860	4,000	-18,051	12.2	○
사례 18	3급지	단독	공공	매입 임대	2,200,000	48,530	58,837	55,870	7,340	-51,497	15.8	○

사례 19	3급지	단독	공공	매입 임대	500,000	230,800	64,375	201,000	-29,800	-94,175	37.8	○
사례 20	3급지	단독	공공	매입 임대	500,000	150,500	48,500	150,500	-	-48,500	27.4	○
사례 21	3급지	단독	공공	영구 임대	2,500,000/ 24,933,000	157,685	67,080	159,125	1,440	-65,640	18.7	○
사례 22	3급지	단독	공공	국민 임대	22,000,000	108,000	60,000	184,290	76,290	16,290	14.2	○
사례 23	3급지	부부 +자 녀 (3)	공공	LH전 세입 대	65,000,000	200,000	177,550	268,000	68,000	-109,550	24.8	
사례 24	4급지	단독	민간	아파 트	5,000,000	300,000	168,430	163,000	-137,000	-305,430	42.1	○
사례 25	4급지	단독	민간	아파 트	6,000,000	300,000	213,005	163,000	-137,000	-350,005	45.2	○

자료: 2022년 가계부조사.

주1: 보증금의 연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거급여에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임대료보다 주거급여액이 큰 가구가 있음.

주2: 사례21의 보증금/월임대료/주거급여는 이사 전 250만원/139,035원/117,250원, 이사 후 24,933,3천원/206,550원/201,000원임.

주3: 월소득대비 주거비(임대료·관리비·수도광열비) 부담이 30% 이상인 가구는 음영 표시함.

□ 식비

- 식비는 식료품비와 외식비로 구성됨
  - 주거급여를 제외한 소득에서 식비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는 14가구임
- 2개월 간 육류 구입을 한 번도 안 한 가구는 9가구, 생선 등 수산물을 한 번도 구입하지 않은 가구는 14가구, 과일을 한 번도 구입하지 않은 가구는 9가구임(부록 2 참조)
- 식료품비 중 1순위로 지출한 항목이 ‘기타식품’인 가구는 11가구로 가장 많음
  - 기타식품에는 죽 및 스프, 김치, 반찬류, 즉석동결식품 등이 포함됨
- 1인 가구(22가구)의 월평균 식비는 258,556원임
  - 월평균 식료품비 205,186원, 외식비 53,370원임. 하루 평균 8,618원을 식사비로 지출함
  - 월평균 총소득대비 식비 비율은 29.6%임. 주거급여를 제외한 소득대비 식비 비율은 37.2%임
- 가계부조사 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메뉴와 방법을 기록했는데, 61일 동안 하루 3끼 식사를 기준으로 살펴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사례1은 당뇨가 있고, 인슐린을 맞고 있어 식단 관리가 필요하지만 식사를 거르거나 우유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음. 가계부조사 기간 중 23회 식사를 거르고, 47회 우유로 식사를 대체했으며, 34회 라면으로 식사함. 그 외 빵, 떡, 국수, 떡볶이 등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경우도 다수임. 모야모야병이 있어 손과 몸떨림이 심해 칼을 이용한 조리를 하기 어렵지만 별도의 반찬 지원 등은 받지 못함
  - 사례2는 디스크가 있으며, 조사 기간 중 61회 식사를 거르고, 라면, 국수, 빵, 고구마 등으로 20회 이상 식사를 대체함. 외식보다는 반찬을 구입해서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식비를 아끼기 위해 국, 찌개를 조리할 때 가능하면 재료를 넣지 않음
  - 사례4는 위장질환이 심한데, 대부분의 식사를 라면, 과자로 해결함. 조사 기간 중 식사를 78회 거르고, 60회 라면으로 대체함. ‘밥’이 들어간 식사를 한 것은 26회임. 스스로 청소, 요리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함

- 사례5는 치아가 없어 대부분 식사를 거르거나 죽, 막걸리로 대체함. 조사 기간 중 45회 식사를 거르고, 61회 죽, 36회 막걸리로 식사를 대신함
- 사례19는 고혈압 디스크가 있음. 조사 기간 중 90회 식사를 거르고, 44회 식사를 대체함

표 40. 식비

(단위: 원, %)

구분	지역	가구 유형	임대 유형	식료품비	외식비	식비 합계	총소득 대비 비율	주거급여 제외 소득대비 비율
사례1	서울	단독	공공	112,575	28,900	141,475	19.1	22.4
사례2	서울	단독	공공	99,590	24,000	123,590	18.6	19.9
사례3	서울	단독	공공	55,570	66,750	122,320	16.4	19.7
사례4	서울	단독	공공	208,645	70,300	278,945	42.2	47.8
사례5	서울	단독	공공	164,580	-	164,580	25.6	28.2
사례6	서울	단독	공공	63,225	60,900	124,125	11.2	13.6
사례7	서울	단독	공공	92,680	80,750	173,430	15.8	19.1
사례8	서울	단독	공공	413,065	84,480	497,545	43.6	61.2
사례9	서울	단독	공공	80,200	-	80,200	8.8	13.7
사례10	서울	단독	민간	210,220	2,000	212,220	23.8	36.5
사례11	서울	조모+모+자녀(4)	공공	708,242	66,150	774,392	55.1	82.9
사례12	서울	단독	민간	528,300	24,500	552,800	62.4	93.9
사례13	서울	단독	공공	188,315	120,500	308,815	38.6	52.8
사례14	서울	단독	공공	124,065	3,000	127,065	15.7	21.9
사례15	서울	부부(2)	공공	164,865	-	164,865	20.3	28.2
사례16	부산	단독	민간	246,050	44,800	290,850	37.1	49.9
사례17	부산	단독	공공	109,375	132,250	241,625	35.1	38.8
사례18	부산	단독	공공	159,816	221,950	381,766	56.2	61.2
사례19	대구	단독	공공	103,060	-	103,060	13.2	17.7
사례20	대구	단독	공공	289,305	24,500	313,805	43.2	54.5

## 54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사례21	대구	단독	공공	258,070	124,450	382,520	31.8	36.6
사례22	대구	단독	공공	302,040	24,500	326,540	27.6	32.7
사례23	대구	부부+ 자녀 (3)	공공	37,650	-	137,650	9.0	11.0
사례24	충북	단독	민간	315,585	13,500	329,085	29.6	34.7
사례25	충북	단독	민간	389,765	22,100	411,865	36.3	42.4
1인 가구 평균				205,186	53,370	258,556	29.6	37.2

자료: 2022년 가계부조사.

주: 주거급여를 제외한 소득대비 식비 부담이 30% 이상인 가구는 음영 표시함.

### □ 보건비

- 보건비에는 외래진료비, 의약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비 등이 포함됨
- 보건비의 주요 지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례9는 영양제, 허리통증약, 안경 등에 주로 지출함
  - 사례10은 혈당검사지, 혈압기 등 건강측정용품과 영양제 등에 주로 지출함
  - 사례11은 코로나 자가키트, 수면내시경, 건강검진 등에 주로 지출함
  - 사례15는 약제비 등에 주로 지출함
  - 사례20은 입원 기간 중 영양제, 퇴원비 등에 주로 지출함
  - 사례21은 휠체어 배터리 교체 비용에 60만원 이상 지출했으며, 스포츠 바우처 물리치료비 등에 지출함

표 41. 보건비

(단위: 원, %)

구분	지역	가구 유형	입대 유형	장애	만성질환	보건비	총소득대비 비율	주거급여 제외 소득대비 비율
사례1	서울	단독	공공	-	당뇨·모야모야병	1,000	0.1	0.2
사례2	서울	단독	공공	지체(경)	디스크	4,200	0.6	0.7
사례3	서울	단독	공공	시각(경)	관절염	15,591	2.1	2.5
사례4	서울	단독	공공	-	위장병·정신질환		1.3	1.5



					안질환·뇌전증	8,820		
사례5	서울	단독	공공	-	치과질환	8,550	1.3	1.5
사례6	서울	단독	공공	지체(경)	혈압·당뇨·디스크·정신질환·치과질환	-	-	-
사례7	서울	단독	공공	-	혈압·당뇨·고지혈증	-	-	-
사례8	서울	단독	공공	뇌병변(중)	관절염·위장병	42,330	3.7	5.2
사례9	서울	단독	공공	-	위장병·정신질환·치과질환	81,780	9.0	14.0
사례10	서울	단독	민간	-	혈압·당뇨·호흡기질환·치과질환	94,350	10.6	16.2
사례11	서울	조모+모+자녀(4)	공공	-	신장질환	126,210	9.0	13.5
사례12	서울	단독	민간	-	관절염·디스크	4,000	0.5	0.7
사례13	서울	단독	공공	-	간질환·혈압·고지혈증	750	0.1	0.1
사례14	서울	단독	공공	지적(경)	당뇨·안질환	12,200	1.5	2.1
사례15	서울	부부(2)	공공	-	심장질환·중풍	65,500	8.1	11.2
사례16	부산	단독	민간	-	당뇨·비뇨기질환	40,150	5.1	6.9
사례17	부산	단독	공공	지체(경)	알콜·허리통증	750	0.1	0.1
사례18	부산	단독	공공	청각(경)	허리통증·피부질환	37,550	5.5	6.0
사례19	대구	단독	공공	-	혈압·디스크	3,000	0.4	0.5
사례20	대구	단독	공공	-	혈압·디스크	115,000	15.8	20.0
사례21	대구	단독	공공	뇌병변(중)	디스크	343,525	28.5	32.9
사례22	대구	단독	공공	뇌병변(중)	-	-	-	-
사례23	대구	부부+자녀(3)	공공	-	혈압·디스크	2,000	0.1	0.2
사례24	충북	단독	민간	지체(중)	치과질환	5,100	0.5	0.5
사례25	충북	단독	민간	지체(중)	-	3,000	0.3	0.3

자료: 2022년 가계부조사.

주: 소득대비 보건비 부담이 큰 가구는 음영 표시함.

## 56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 □ 교통비

- 교통비에는 버스·지하철, 택시, 자차운영비, 택배 등 운송비 등이 포함됨
- 사례21은 이사운송비가 포함됨 금액임
- 사례21을 제외한 1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교통비는 0원부터 약 9만원까지 편차가 큼. 교통비가 0원인 가구는 장애가 있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만 이용하거나 어지럼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가구가 포함됨

표 42. 교통비

(단위: 원, %)

구분	지역	가구유형	임대유형	장애	교통비	총소득 대비 비율	주거급여 제외 소득대비 비율
사례1	서울	단독	공공	-	74,225	10.0	11.8
사례2	서울	단독	공공	지체(경)	-	-	-
사례3	서울	단독	공공	시각(경)	-	-	-
사례4	서울	단독	공공	-	68,355	10.3	11.7
사례5	서울	단독	공공	-	9,900	1.5	1.7
사례6	서울	단독	공공	지체(경)	-	-	-
사례7	서울	단독	공공	-	91,200	8.3	10.1
사례8	서울	단독	공공	뇌병변(중)	90,900	8.0	11.2
사례9	서울	단독	공공	-	-	-	-
사례10	서울	단독	민간	-	15,000	1.7	2.6
사례11	서울	조모+모+자녀(4)	공공	-	33,675	2.4	3.6
사례12	서울	단독	민간	-	7,400	0.8	1.3
사례13	서울	단독	공공	-	10,000	1.3	1.7
사례14	서울	단독	공공	지적(경)	8,400	1.0	1.4
사례15	서울	부부(2)	공공	-	37,500	4.6	6.4
사례16	부산	단독	민간	-	20,000	2.5	3.4
사례17	부산	단독	공공	지체(경)	5,500	0.8	0.9
사례18	부산	단독	공공	청각(경)	6,600	1.0	1.1
사례19	대구	단독	공공	-	15,000	1.9	2.6
사례20	대구	단독	공공	-	40,000	5.5	7.0
사례21	대구	단독	공공	뇌병변(중)	354,750	29.5	33.9
사례22	대구	단독	공공	뇌병변(중)	11,600	1.0	1.2
사례23	대구	부부+자녀(3)	공공	-	38,550	2.5	3.1
사례24	충북	단독	민간	지체(중)	67,150	6.0	7.1
사례25	충북	단독	민간	지체(중)	17,850	1.6	1.8

자료: 2022년 가계부조사.

## □ 통신비

- 통신비에는 휴대폰 및 인터넷 요금 등이 포함됨
- 오락·문화비에는 TV수신료, 반려동물, 화훼, 오락, 악기, 운동용품비 등이 포함됨. 이 중 TV수신료에 인터넷케이블TV 비용은 통신비에 합산함
  - 케이블TV와 인터넷 수신비를 합산해 지불하는 가구는 통신비에 해당하는 인터넷비용과 오락·문화비에 해당하는 TV수신료를 별도로 계산할 수 없어 통신비에 합산하여 계산함
- 1인 가구의 월평균 휴대폰·인터넷·케이블TV 수신 요금은 78,017원임
  - 주거급여를 제외한 월소득 대비 통신비 등 비율은 11.5%임

## 58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표 43. 통신비 및 오락·문화비 중 케이블TV

(단위: 원, %)

구분	지역	가구유형	임대유형	통신비	오락·문화비 중 인터넷 케이블TV	총소득 대비 비율	주거급여 제외 소득대 비 비율
사례1	서울	단독	공공	43,020	34,770	10.5	12.3
사례2	서울	단독	공공	5,000	21,670	4.0	4.3
사례3	서울	단독	공공	104,595	12,687	15.7	18.9
사례4	서울	단독	공공	117,675	8,800	19.1	21.7
사례5	서울	단독	공공	8,140	26,400	5.4	5.9
사례6	서울	단독	공공	28,090	36,190	5.8	7.1
사례7	서울	단독	공공	-	24,200	2.2	2.7
사례8	서울	단독	공공	34,885	5,073	3.5	4.9
사례9	서울	단독	공공	47,940	25,175	8.0	12.5
사례10	서울	단독	민간	52,800	22,000	8.4	12.9
사례11	서울	조모+모+ 자녀(4)	공공	88,584	30,800	6.3	9.5
사례12	서울	단독	민간	9,000	-	1.0	1.5
사례13	서울	단독	공공	67,050	-	8.4	11.5
사례14	서울	단독	공공	39,720	119,990	19.7	27.5
사례15	서울	부부(2)	공공	113,465	38,000	18.6	25.9
사례16	부산	단독	민간	24,695	8,800	4.3	5.7
사례17	부산	단독	공공	63,775	25,301	12.9	14.3
사례18	부산	단독	공공	66,950	27,225	13.9	15.1
사례19	대구	단독	공공	130,510	38,330	21.6	29.1
사례20	대구	단독	공공	36,300	3,300	5.5	6.9
사례21	대구	단독	공공	36,696	50,256	7.2	8.3
사례22	대구	단독	공공	140,000	80,000	18.6	22.0
사례23	대구	부부+자녀 (3)	공공	155,000	-	10.2	12.4
사례24	충북	단독	민간	47,380	18,700	5.9	7.0
사례25	충북	단독	민간	23,275	-	2.1	2.4
1인 가구 평균				51,250	26,767	9.2	11.5

자료: 2022년 가계부조사.

□ 오락·문화비

- TV수신료를 제외한 오락·문화비 지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오락·문화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은 가구는 12가구이고, 월 5만원 이상 지출한 가구의 주요 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사례2는 마권·스포츠토토 구입비 등에 주로 지출함
  - 사례11은 영화, 볼링, 반려동물 사료비 등에 주로 지출함
  - 사례17은 반려동물 사료비, 미용비 등에 주로 지출함

표 44. 오락·문화비 중 기타

(단위: 원, %)

구분	지역	가구유형	임대 유형	오락·문화비 중 기타	총소득대비 비율	주거급여 제외 소득대비 비율
사례1	서울	단독	공공	7,700	1.0	1.2
사례2	서울	단독	공공	119,000	17.9	19.2
사례3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4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5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6	서울	단독	공공	5,000	0.5	0.5
사례7	서울	단독	공공	12,000	1.1	1.3
사례8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9	서울	단독	공공	3,000	0.3	0.5
사례10	서울	단독	민간	-	-	-
사례11	서울	조모+모+자녀(4)	공공	55,100	3.9	5.9
사례12	서울	단독	민간	13,250	1.5	2.2
사례13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14	서울	단독	공공	750	0.1	0.1
사례15	서울	부부(2)	공공	-	-	-
사례16	부산	단독	민간	16,300	2.1	2.8
사례17	부산	단독	공공	168,000	24.4	27.0
사례18	부산	단독	공공	-	-	-
사례19	대구	단독	공공	-	-	-
사례20	대구	단독	공공	13,500	1.9	2.3
사례21	대구	단독	공공	-	-	-
사례22	대구	단독	공공	-	-	-
사례23	대구	부부+자녀(3)	공공	5,000	0.3	0.4
사례24	충북	단독	민간	12,300	1.1	1.3
사례25	충북	단독	민간	-	-	-

자료: 2022년 가계부조사.

## 60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 □ 의류 및 신발비

- 의류 및 신발비 지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례11은 학령기 자녀 옷과 운동화 구입 등에 10만원 이상 지출함

표 45. 의류 및 신발비

(단위: 원, %)

구분	지역	가구유형	임대 유형	의류 및 신발비	총소득 대비 비율	주거급여 제외 소득대비 비율
사례1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2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3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4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5	서울	단독	공공	1,500	0.2	0.3
사례6	서울	단독	공공	2,500	0.2	0.3
사례7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8	서울	단독	공공	4,150	0.4	0.5
사례9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10	서울	단독	민간	-	-	-
사례11	서울	조모+모+자녀(4)	공공	109,775	7.8	11.7
사례12	서울	단독	민간	6,500	0.7	1.1
사례13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14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15	서울	부부(2)	공공	-	-	-
사례16	부산	단독	민간	10,070	1.3	1.7
사례17	부산	단독	공공	4,950	0.7	0.8
사례18	부산	단독	공공	2,500	0.4	0.4
사례19	대구	단독	공공	10,000	1.3	1.7
사례20	대구	단독	공공	38,250	5.3	6.6
사례21	대구	단독	공공	24,500	2.0	2.3
사례22	대구	단독	공공	9,000	0.8	0.9
사례23	대구	부부+자녀(3)	공공	10,000	0.7	0.8
사례24	충북	단독	민간	32,550	2.9	3.4
사례25	충북	단독	민간	14,300	1.3	1.5

자료: 2022년 가계부조사.

□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에는 가구 및 조명, 가전 및 가정용기기, 주방용품, 가사소모품 등이 포함됨
  - 사례11은 자녀 책장 구입에 7만원을 지출함
  - 사례12는 도어락 교체비로 16만원을 지출함
  - 사례14는 정수기 렌탈비를 월 27,900원 지출함
  - 사례21은 이사를 하면서 가구, 가전 등 구입에 200만원 이상 지출함

표 46.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단위: 원, %)

구분	지역	가구유형	임대 유형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총소득 대비 비율	주거급여 제외 소득대비 비율
사례1	서울	단독	공공	250	0.0	0.0
사례2	서울	단독	공공	1,000	0.2	0.2
사례3	서울	단독	공공	9,900	1.3	1.6
사례4	서울	단독	공공	19,535	3.0	3.3
사례5	서울	단독	공공	11,250	1.7	1.9
사례6	서울	단독	공공	3,825	0.3	0.4
사례7	서울	단독	공공	17,000	1.6	1.9
사례8	서울	단독	공공	23,120	2.0	2.8
사례9	서울	단독	공공	3,000	0.3	0.5
사례10	서울	단독	민간	46,940	5.3	8.1
사례11	서울	조모+모+자녀(4)	공공	64,300	4.6	6.9
사례12	서울	단독	민간	80,000	9.0	13.6
사례13	서울	단독	공공	50,000	6.3	8.5
사례14	서울	단독	공공	63,540	7.8	10.9
사례15	서울	부부(2)	공공	1,000	0.1	0.2
사례16	부산	단독	민간	27,250	3.5	4.7
사례17	부산	단독	공공	10,000	1.5	1.6
사례18	부산	단독	공공	25,038	3.7	4.0
사례19	대구	단독	공공	4,500	0.6	0.8
사례20	대구	단독	공공	17,995	2.5	3.1
사례21	대구	단독	공공	2,176,200	180.7	208.2
사례22	대구	단독	공공	22,940	1.9	2.3
사례23	대구	부부+자녀(3)	공공	13,000	0.9	1.0
사례24	충북	단독	민간	36,720	3.3	3.9
사례25	충북	단독	민간	40,250	3.5	4.1

자료: 2022년 가계부조사.

## 62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 □ 기타상품 및 서비스

- 기타상품 및 서비스에는 이미용서비스, 위생 및 이미용품, 시계 및 장신구, 기타 개인용품 등이 포함됨
- 사례7은 퀵서비스를 하면서 업무 관련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이용료, 엔진오일 교체 관련하여 주로 지출하고, 3월에는 오토바이 엔진 수리비로 70만원을 지출함
- 사례11은 이미용비, 화장품, 가방 등에 주로 지출함
- 사례16은 민간보험료를 월 137,800원 지출하고, 그 외 목욕비 등에 지출함
- 사례23은 민간보험료를 월 10만원 지출함

표 47. 기타상품 및 서비스

(단위: 원, %)

구분	지역	가구유형	임대 유형	기타상품 및 서비스	총소득대비 비율	주거급여 제외 소득대비 비율
사례1	서울	단독	공공	6,000	0.8	1.0
사례2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3	서울	단독	공공	8,025	1.1	1.3
사례4	서울	단독	공공	21,000	3.2	3.6
사례5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6	서울	단독	공공	13,750	1.2	1.5
사례7	서울	단독	공공	376,500	34.3	41.6
사례8	서울	단독	공공	70,190	6.2	8.6
사례9	서울	단독	공공	11,450	1.3	2.0
사례10	서울	단독	민간	39,400	4.4	6.8
사례11	서울	조모+모+자녀(4)	공공	107,650	7.7	11.5
사례12	서울	단독	민간	-	-	-
사례13	서울	단독	공공	2,745	0.3	0.5
사례14	서울	단독	공공	10,950	1.4	1.9
사례15	서울	부부(2)	공공	4,000	0.5	0.7
사례16	부산	단독	민간	195,800	25.0	33.6
사례17	부산	단독	공공	22,150	3.2	3.6
사례18	부산	단독	공공	24,524	3.6	3.9
사례19	대구	단독	공공	11,650	1.5	2.0
사례20	대구	단독	공공	47,950	6.6	8.3
사례21	대구	단독	공공	1,450	0.1	0.1
사례22	대구	단독	공공	17,240	1.5	1.7
사례23	대구	부부+자녀(3)	공공	118,500	7.8	9.5
사례24	충북	단독	민간	56,145	5.0	5.9
사례25	충북	단독	민간	23,020	2.0	2.4

자료: 2022년 가계부조사.



□ 주류 및 담배

- 주류 및 담배 지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례5는 치아가 없어 씹지 않아도 되는 죽을 주식으로 하며, 막걸리로 식사를 대신하기도 함
  - 사례1, 사례12는 담배값 지출이 많아, 생활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금연하려고 노력하기도 함

표 48. 주류 및 담배

(단위: 원, %)

구분	지역	가구유형	임대 유형	주류	담배	총소득 대비 비율	주거급여 제외 소득대비 비율
사례1	서울	단독	공공	4,850	125,050	17.5	20.6
사례2	서울	단독	공공	24,100	-	3.6	3.9
사례3	서울	단독	공공	21,175	-	2.8	3.4
사례4	서울	단독	공공	-	-	-	-
사례5	서울	단독	공공	121,850	63,550	28.8	31.7
사례6	서울	단독	공공	22,000	124,000	13.2	16.0
사례7	서울	단독	공공	18,940	-	1.7	2.1
사례8	서울	단독	공공	12,850	9,000	1.9	2.7
사례9	서울	단독	공공	-	-	-	-
사례10	서울	단독	민간	2,500	-	0.3	0.4
사례11	서울	조모+모+자녀(4)	공공	-	-	-	-
사례12	서울	단독	민간	57,350	45,000	11.6	17.4
사례13	서울	단독	공공	-	-	-	-
사례14	서울	단독	공공	-	-	-	-
사례15	서울	부부(2)	공공	-	-	-	-
사례16	부산	단독	민간	-	-	-	-
사례17	부산	단독	공공	13,750	54,000	9.8	10.9
사례18	부산	단독	공공	-	-	-	-
사례19	대구	단독	공공	-	35,000	4.5	6.0
사례20	대구	단독	공공	-	121,500	16.7	21.1
사례21	대구	단독	공공	16,800	-	1.4	1.6
사례22	대구	단독	공공	-	-	-	-
사례23	대구	부부+자녀(3)	공공	-	-	-	-
사례24	충북	단독	민간	-	-	-	-
사례25	충북	단독	민간	2,600	-	0.2	0.3

자료: 2022년 가계부조사.

## 64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 □ 교육비

- 2022년 가계부조사에 참여한 가구 중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는 2가구임
  - 사례11은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며 외국어 교재비, 체험학습비 등에 주로 지출함
  - 사례23은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며 학교에서의 조식·석식비, 교재비에 주로 지출함

표 49. 교육비

(단위: 원, %)

구분	지역	가구유형	임대 유형	교육비	총소득대비 비율	주거급여 제외 소득대비 비율
사례1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2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3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4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5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6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7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8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9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10	서울	단독	민간	-	-	-
사례11	서울	조모+모+자녀(4)	공공	37,150	2.6	4.0
사례12	서울	단독	민간	-	-	-
사례13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14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15	서울	부부(2)	공공	-	-	-
사례16	부산	단독	민간	-	-	-
사례17	부산	단독	공공	-	-	-
사례18	부산	단독	공공	-	-	-
사례19	대구	단독	공공	-	-	-
사례20	대구	단독	공공	-	-	-
사례21	대구	단독	공공	12,500	1.0	1.2
사례22	대구	단독	공공	-	-	-
사례23	대구	부부+자녀(3)	공공	279,000	18.3	22.3
사례24	충북	단독	민간	-	-	-
사례25	충북	단독	민간	-	-	-

자료: 2022년 가계부조사.

□ 기타지출

- 기타지출 중 기타 대출 및 전세금 반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모든 가구에서 채무 변제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대부분임
  - 사례19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납부하는 금액 부담이 큼

표 50. 기타 대출 및 전세금 반환

(단위: 원, %)

구분	지역	가구유형	임대유형	기타 대출 및 전세금 반환	총소득대비 비율	주거급여 제외 소득대비 비율
사례1	서울	단독	공공	21,000	2.8	3.3
사례2	서울	단독	공공	50,000	7.5	8.1
사례3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4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5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6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7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8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9	서울	단독	공공	128,800	14.1	22.1
사례10	서울	단독	민간	-	-	-
사례11	서울	조모+모+자녀(4)	공공	300,000	21.3	32.1
사례12	서울	단독	민간	-	-	-
사례13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14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15	서울	부부(2)	공공	150,000	18.4	25.7
사례16	부산	단독	민간	-	-	-
사례17	부산	단독	공공	50,000	7.3	8.0
사례18	부산	단독	공공	-	-	-
사례19	대구	단독	공공	271,233	34.7	46.7
사례20	대구	단독	공공	5,000	0.7	0.9
사례21	대구	단독	공공	-	-	-
사례22	대구	단독	공공	-	-	-
사례23	대구	부부+자녀(3)	공공	-	-	-
사례24	충북	단독	민간	-	-	-
사례25	충북	단독	민간	-	-	-

자료: 2022년 가계부조사.

## 66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 기타지출 중 저축 및 적금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51. 저축 및 적금

(단위: 원, %)

구분	지역	가구유형	임대유형	저축 및 적금	총소득 대비비율	주거급여 제외 소득대비 비율
사례1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2	서울	단독	공공	40,100	6.0	6.5
사례3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4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5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6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7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8	서울	단독	공공	50,000	4.4	6.1
사례9	서울	단독	공공	20,000	2.2	3.4
사례10	서울	단독	민간	-	-	-
사례11	서울	조모+모+자녀(4)	공공	400,000	28.5	42.8
사례12	서울	단독	민간	-	-	-
사례13	서울	단독	공공	50,000	6.3	8.5
사례14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15	서울	부부(2)	공공	-	-	-
사례16	부산	단독	민간	-	-	-
사례17	부산	단독	공공	-	-	-
사례18	부산	단독	공공	5,000	0.7	0.8
사례19	대구	단독	공공	-	-	-
사례20	대구	단독	공공	5,000	0.7	0.9
사례21	대구	단독	공공	125,000	10.4	12.0
사례22	대구	단독	공공	500,000	42.3	50.1
사례23	대구	부부+자녀(3)	공공	80,000	5.3	6.4
사례24	충북	단독	민간	-	-	-
사례25	충북	단독	민간	-	-	-

자료: 2022년 가계부조사.

□ 비소비지출

- 비소비지출에는 경상/비경상조세, 연금/사회보장,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 이전비 등이 포함됨
  - 사례2는 범칙금 분납금, 비영리단체 후원금 등에 주로 지출함
  - 사례5는 연체된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로 월 7만원 정도를 지출하며, 그 외 비영리단체 후원금 등에 지출함
  - 사례9는 SH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며, 보증금에 대한 이자로 월 126,900원을 지출함
  - 사례11은 자녀 용돈에 주로 지출함
  - 사례17은 현금과 후원금 등에 주로 지출함
  - 사례23은 LH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며, 보증금에 대한 이자로 월 81,530원을 지출함. 그 외 자녀 용돈 등에 주로 지출함
  - 사례25는 비영리단체 후원금 등에 주로 지출함

## 68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표 52. 비소비지출

(단위: 원, %)

구분	지역	가구유형	임대유형	비소비지출	총소득 대비 비율	주거급여 제외 소득대비 비율
사례1	서울	단독	공공	10,000	1.4	1.6
사례2	서울	단독	공공	96,300	14.5	15.5
사례3	서울	단독	공공	7,000	0.9	1.1
사례4	서울	단독	공공	2,050	0.3	0.4
사례5	서울	단독	공공	166,286	25.9	28.4
사례6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7	서울	단독	공공	29,000	2.6	3.2
사례8	서울	단독	공공	5,000	0.4	0.6
사례9	서울	단독	공공	126,900	13.9	21.8
사례10	서울	단독	민간	-	-	-
사례11	서울	조모+모+자녀(4)	공공	184,700	13.1	19.8
사례12	서울	단독	민간	-	-	-
사례13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14	서울	단독	공공	-	-	-
사례15	서울	부부(2)	공공	40,324	5.0	6.9
사례16	부산	단독	민간	-	-	-
사례17	부산	단독	공공	70,000	10.2	11.3
사례18	부산	단독	공공	32,500	4.8	5.2
사례19	대구	단독	공공	-	-	-
사례20	대구	단독	공공	-	-	-
사례21	대구	단독	공공	27,500	2.3	2.6
사례22	대구	단독	공공	-	-	-
사례23	대구	부부+자녀(3)	공공	326,530	21.5	26.1
사례24	충북	단독	민간	20	0.0	0.0
사례25	충북	단독	민간	75,000	6.6	7.7

자료: 2022년 가계부조사.

2) 2018·2022년 가계부조사 참여가구

- 2018년과 2022년 가계부조사에 모두 참여한 6가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례4는 2018년 조사 당시 고시원에 거주했으며, 조사 기간 중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임. 고시원에서 지불하지 않던 수도광열비에 대한 지출이 있고, 식료품비와 교통비가 증가함. 식료품비가 증가했지만 식사 내용을 보면 2018년에는 무료급식, 외식 등을 많이 한 반면, 현재는 라면, 과자 등을 주식으로 함.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면서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을 받지만 요리를 전혀 하지 못해, 조리 과정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라면을 주식으로 함
- 사례6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광열비가 큰폭으로 증가함. 현재 장애인권익옹호 활동으로 소득이 증가했지만 지출에 큰 변화는 없음. 식사를 비교하면 2018년보다 식료품비와 외식비 모두 지출이 감소했고, 식료품비에서 채소 등에 대한 지출이 증가함
- 사례12는 약 2평의 쪽방에서 5평의 민간임대로 이주함. 월 임대료는 22만원으로 같고, 수도광열비가 다소 증가함. 2022년에는 식료품비가 크게 증가했는데, 설, 추석, 부모님 제사 등에 비용을 대부분 지출함. 차례를 지내기 위해 지인에게 50만원을 빌리기도 하고, 1년에 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월 10만원을 저금하려고 노력함
- 사례14는 매입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지출에 큰 변화가 없음. 지적장애가 있으나 재심사를 받지 않아 장애수당이나 장애연금을 수령하지 않음. 재심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기존 2급에서 3급이 나올까 우려되어서임. 2018년에는 휴대폰 요금이 약 10만원으로 지출이 컸는데, 2022년에는 약 4만원으로 감소함
- 사례23은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임. 수도광열비와 교통비가 다소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 지출에 큰 변화는 없음. 성장기 자녀가 있지만 식비 지출은 2018년보다 감소했고, 2022년 가계부조사 기간 동안 외식을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나타남. 전체 지출에서 교육비, 관리비·수도광열비,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 사례25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이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어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민간 아파트에 계속 거주 중임. 월 임대료와 관리비·수도광열비에 대한 부담은 유사한 수준인데, 총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45%

## 70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로 크게 높음. 주거비 외에 욕창으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지만 비용 지출에 부담이 커 외출을 최소화하는 등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함



표 53. 참여가구 특성

구분	지역	가구 유형	연령(세)	장애	소득	지출	주거					식비		보건비	교통비	통신비
							임대유형	주택유형	방수(개)	월임대료(원)	관리비·수도광열비	식료품비	외식비			
7/4	서울	단독	33	-	713,040	1,418,400	민간	고시원	1	230,000	-	121,000	137,200	11,010	117,880	24,350
			36		661,560	612,140	공공	매입임대	2	76,390	10,570	208,645	70,300	8,820	68,355	117,675
3/6	서울	단독	61	지체(경)	548,390	515,320	공공	매입임대	1	189,000	23,320	164,410	80,650	6,820	9,800	35,380
			64		1,107,310	654,955				194,700	100,775	63,225	60,900	15,591	-	28,090
18/12	서울	단독	69	-	713,040	656,100	민간	쪽방	1	220,000	28,400	197,650	18,500	12,750	13,900	-
			72		885,600	1,090,000	민간	단독·다가구	1	220,000	34,700	528,300	24,500	4,000	7,400	9,000
5/14	서울	단독	31	지체(경)	713,075	708,580	공공	매입임대	2	213,000	83,165	226,480	27,350	19,500	53,150	92,030
			34		850,620	636,675				227,980	26,080	124,065	3,000	12,200	8,400	39,720
29/23	대구	부부+자녀(3)	48	-	1,195,400	1,312,910	공공	LH 전세임대	3	35,000	160,660	197,270	76,500	4,000	19,500	231,760
			50		1,521,210	1,462,780				200,000	177,550	137,650	-	2,000	38,550	155,000
25	충북	단독	37	지체(중)	927,690	939,490	민간	아파트	2	300,000	212,360	184,060	33,400	11,550	20,850	15,250
			40		1,133,950	1,124,165				300,000	213,005	389,765	22,100	3,000	17,850	23,275

자료: 2022년 가계부조사.

주1: 가구유형의 괄호 안 숫자는 가구원 수입.

주2: 연령, 장애, 만성질환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함.

주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경),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중)으로 기재함.

### 3. 요약 및 시사점

#### □ 건강하게 생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계급여 상황

- 가계부조사에 참여한 25가구 중 11가구는 수입을 초과해서 지출하며, 소득의 절반 이상을 식비와 주거비로 지출함
  -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 1순위가 식비인 가구가 10가구, 임대료·관리비·수도광열비를 포함한 주거비인 가구가 10가구임
  - 전체 지출에서 식비와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55.7%으로 절반 이상임
  - 2018년과 2022년 가계부조사에 모두 참여한 가구는 6가구인데, 수입과 지출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대부분 식생활의 질이 저하됨
- 수급가구는 정해진 소득 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식비를 줄이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며 그 외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조사 기간 중 이사를 한 1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200만원 이상이고, 도어락 교체, 오토바이 엔진 수리 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데 대처하기 어려움
- 수급가구는 대부분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해 수급을 받는데, 이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고립되며,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2016년 29% → 2017년 30%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상향되지 않음

#### □ 만성질환, 성장기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반찬, 밀키트 지원

- 가계부조사 참여 가구 중 2개월 간 육류 구입을 한 번도 안 한 가구는 9가구, 생선 등 수산물을 한 번도 구입하지 않은 가구는 14가구, 과일을 한 번도 구입하지 않은 가구는 9가구임

- 당뇨, 고혈압, 위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음에도 식단 관리를 하지 못하며, 생활비에 대한 부담으로 성장기 자녀가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함
- 만성질환, 성장기 아동이 있는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반찬, 밀키트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에 대한 지원

- 25가구 모두 주거급여를 받고 있지만, 주거급여로 임대료·관리비·수도광열비를 포함한 주거비를 모두 충당하는 가구는 3가구뿐임
-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가 11가구이고, 이 중 5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40% 이상으로 크게 높음
  -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모두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기·도시가스·수도 요금 등을 감면받고,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음에도,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35만원을 부담함
- 수급가구는 전기·도시가스·수도 요금 등을 감면받지만 충분하지 않고, 현재 에너지바우처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넓고, 연간 지원금액이 적은 문제가 있음
  -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한해 지급함
  - 한편,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1인 가구 103,500→137,200원(32.6%), 2인 가구 146,500→189,500원(29.4%), 3인 가구 184,500원→258,900원(40.3%), 4인 이상 가구 209,500→347,000원(65.6%)으로 상향함
  - 한시적인 자격 요건과 지원금액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과 같은 세부 조건을 부과하지 않아 에너지 사각지대를 포괄할 필요가 있음
-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등 일부를 제외하고 관리비가 부과지만, 이에 대한 감면이나 지원은 없음
- 2015년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개편되기 전까지는 최저생계비에 관리비 등

## 74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이 포함되어 현금급여를 지원함. 2015년 이후에는 주거급여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면서 관리비 항목을 고려한 수급가구 지원이 되지 않고 있음

- 2022년 가계부조사 참여가구 중 주거급여에서 월 임대료를 제외하고 자부담을 하는 가구는 3가구이며, 22가구는 기준임대료보다 최소 1,000원, 최대 289,600원까지 적은 금액을 주거급여로 수급함
-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경우 관리비를 포함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 주거급여에 기준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 수급가구에 대한 교통비 지원

-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지원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밖에 없으며, 이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만 포함됨
-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는 철도, 시외·고속버스 등에 이용할 수 있지만 버스, 지하철, 택시 등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는 경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외 가구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지원이 없음
- 수급가구는 대부분 건강이 좋지 않아 이동에 제약이 있는데, 문화누리카드와 같이 연간 일정금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부록1] 비목별 수입·지출 현황

○자료: 2022년 가계부조사.

○주1: 항목별 금액은 2월 18일~4월 19일까지 합산한 금액임.

○주2: 지출 1순위를 분홍색, 지출 2순위를 노란색으로 표시함.

## 76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표 54. 사례1~사례5의 비목별 수입·지출 현황

(단위: 원, %)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식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225,150	19.4	199,180	14.7	111,140	12.5	417,290	34.1	329,160	22.6
	음식·숙박 중 외식·단체식제공 등	57,800	5.0	48,000	3.6	133,500	15.1	140,600	11.5	—	—
음식·숙박 중 숙박비		—	—	200,000	14.8	—	—	—	—	—	—
주거	월 임대료	214,580	18.5	74,800	5.5	242,000	27.3	152,780	12.5	113,840	7.8
비	관리비·수도광열	4,360	0.4	105,740	7.8	41,227	4.7	21,140	1.7	178,880	12.3
보건		2,000	0.2	8,400	0.6	31,182	3.5	17,640	1.4	17,100	1.2
교육		—	—	—	—	—	—	—	—	—	—
교통		148,450	12.8	—	—	—	—	136,710	11.2	19,800	1.4
통신		86,040	7.4	10,000	0.7	209,190	23.6	235,350	19.2	16,280	1.1
의류 및 신발		—	—	—	—	—	—	—	—	3,000	0.2
가정용품 및 기사서비스		500	0.0	2,000	0.1	19,800	2.2	39,070	3.2	22,500	1.5
오락	인터넷 케이블TV	69,540	6.0	43,340	3.2	25,374	2.9	17,600	1.4	52,800	3.6
문화	기타	15,400	1.3	238,000	17.6	—	—	—	—	—	—
기타상품 및 서비스		12,000	1.0	—	—	16,050	1.8	42,000	3.4	—	—
주류 및 담배		259,800	22.4	48,200	3.6	42,350	4.8	—	—	370,800	25.5
기타 대출 및 전세금 반환		42,000	3.6	100,000	7.4	—	—	—	—	—	—
저축 및 적금		—	—	80,200	5.9	—	—	—	—	—	—
비소비지출		20,000	1.7	192,600	14.3	14,000	1.6	4,100	0.3	332,571	22.8
<b>지출 합계</b>		<b>1,157,620</b>	<b>100.0</b>	<b>1,350,460</b>	<b>100.0</b>	<b>885,813</b>	<b>100.0</b>	<b>1,224,280</b>	<b>100.0</b>	<b>1,456,731</b>	<b>100.0</b>
생계급여		1,161,700	78.4	1,161,700	81.4	1,161,700	77.9	1,166,900	88.2	554,200	43.1
주거급여		219,350	14.8	84,940	6.0	248,680	16.7	156,220	11.8	117,180	9.1
교육급여		—	—	—	—	—	—	—	—	—	—
장애연금·장애수당		—	—	80,000	5.6	80,000	5.4	—	—	—	—
기초연금		—	—	—	—	—	—	—	—	615,000	47.8
근로소득		—	—	—	—	—	—	—	—	—	—
민간지원·국민연금 등 기타		100,000	6.8	—	—	—	—	—	—	—	—
채무		—	—	100,000	7.0	—	—	—	—	—	—
<b>수입 합계</b>		<b>1,481,050</b>	<b>100.0</b>	<b>1,426,640</b>	<b>100.0</b>	<b>1,490,380</b>	<b>100.0</b>	<b>1,323,120</b>	<b>100.0</b>	<b>1,286,380</b>	<b>100.0</b>

표 55. 사례6~사례10의 비목별 수입·지출 현황

구분		사례6		사례7		사례8		사례9		사례10	
식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26,450	9.7	185,360	10.4	826,130	30.1	160,400	8.9	420,440	25.2
	음식·숙박 중 외식·단체식제공 등	121,800	9.3	161,500	9.0	168,960	6.2	-	-	4,000	0.2
음식·숙박 중 숙박비		-	-	-	-	80,000	2.9	-	-	-	-
주거	월 임대료	389,400	29.7	141,600	7.9	485,000	17.7	600,000	33.3	620,000	37.1
비	관리비·수도광열	201,550	15.4	160,810	9.0	490,630	17.9	146,950	8.1	80,000	4.8
보건		-	-	-	-	84,660	3.1	163,560	9.1	188,700	11.3
교육		-	-	-	-	-	-	-	-	-	-
교통		-	-	182,400	10.2	181,800	6.6	-	-	30,000	1.8
통신		56,180	4.3	-	-	69,770	2.5	95,880	5.3	105,600	6.3
의류 및 신발		5,000	0.4	-	-	8,300	0.3	-	-	-	-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7,650	0.6	34,000	1.9	46,240	1.7	6,000	0.3	93,880	5.6
오락	인터넷 케이블TV	72,380	5.5	48,400	2.7	10,146	0.4	50,350	2.8	44,000	2.6
문화	기타	10,000	0.8	24,000	1.3	-	-	6,000	0.3	-	-
기타상품 및 서비스		27,500	2.1	753,000	42.1	140,380	5.1	22,900	1.3	78,800	4.7
주류 및 담배		292,000	22.3	37,880	2.1	43,700	1.6	-	-	5,000	0.3
기타 대출 및 전세금 반환		-	-	-	-	-	-	257,600	14.3	-	-
저축 및 적금		-	-	-	-	100,000	3.6	40,000	2.2	-	-
비소비지출		-	-	58,000	3.2	10,000	0.4	253,800	14.1	-	-
<b>지출 합계</b>		<b>1,309,910</b>	<b>100.0</b>	<b>1,786,950</b>	<b>100.0</b>	<b>2,745,716</b>	<b>100.0</b>	<b>1,803,440</b>	<b>100.0</b>	<b>1,670,420</b>	<b>100.0</b>
생계급여		723,560	32.7	604,300	27.6	771,400	33.8	1,166,888	64.1	1,161,700	65.2
주거급여		393,340	17.8	380,800	17.4	654,000	28.7	654,000	35.9	620,000	34.8
교육급여		-	-	-	-	-	-	-	-	-	-
장애연금·장애수당		80,000	3.6	-	-	855,000	37.5	-	-	-	-
기초연금		-	-	-	-	-	-	-	-	-	-
근로소득		1,017,720	46.0	1,207,840	55.1	-	-	-	-	-	-
민간지원·국민연금 등 기타		-	-	-	-	-	-	-	-	-	-
채무		-	-	-	-	-	-	-	-	-	-
<b>수입 합계</b>		<b>2,214,620</b>	<b>100.0</b>	<b>2,263,840</b>	<b>100.0</b>	<b>2,280,400</b>	<b>100.0</b>	<b>1,820,888</b>	<b>100.0</b>	<b>1,781,700</b>	<b>100.0</b>

(단위: 원, %)

## 78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표 56. 사례11~사례15의 비목별 수입·지출 현황

(단위: 원 %)

구분		사례11		사례12		사례13		사례14		사례15	
식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416,484	24.6	1,056,600	48.5	376,630	25.6	248,130	19.5	329,730	18.8
	음식·숙박 중 외식·단체식제공 등	132,300	2.3	49,000	2.2	241,000	16.4	6,000	0.5	-	-
음식·숙박 중 숙박비		-	-	-	-	-	-	-	-	-	-
주거	월 임대료	900,000	15.6	560,000	25.7	426,320	29.0	455,960	35.8	358,800	20.5
비	관리비·수도광열	226,840	3.9	69,400	3.2	63,660	4.3	52,160	4.1	162,850	9.3
보건		252,420	4.4	8,000	0.4	1,500	0.1	24,400	1.9	131,000	7.5
교육		74,300	1.3	-	-	-	-	-	-	-	-
교통		67,350	1.2	14,800	0.7	20,000	1.4	16,800	1.3	75,000	4.3
통신		177,168	3.1	18,000	0.8	134,100	9.1	79,440	6.2	226,930	13.0
의류 및 신발		219,550	3.8	13,000	0.6	-	-	-	-	-	-
가정용품 및 기사서비스		128,600	2.2	160,000	7.3	100,000	6.8	127,080	10.0	2,000	0.1
오락	인터넷 케이블TV	61,600	1.1	-	-	-	-	239,980	18.8	76,000	4.3
문화	기타	110,200	1.9	26,500	1.2	-	-	1,500	0.1	-	-
기타상품 및 서비스		215,300	3.7	-	-	5,490	0.4	21,900	1.7	8,000	0.5
주류 및 담배		-	-	204,700	9.4	-	-	-	-	-	-
기타 대출 및 전세금 반환		600,000	10.4	-	-	-	-	-	-	300,000	17.1
저축 및 적금		800,000	13.9	-	-	100,000	6.8	-	-	-	-
비소비지출		369,400	6.4	-	-	-	-	-	-	80,648	4.6
<b>지출 합계</b>		<b>5,751,512</b>	<b>100.0</b>	<b>2,180,000</b>	<b>100.0</b>	<b>1,468,700</b>	<b>100.0</b>	<b>1,273,350</b>	<b>100.0</b>	<b>1,750,958</b>	<b>100.0</b>
생계급여		1,698,660	32.2	166,000	7.3	1,169,700	73.1	1,161,700	71.7	1,168,000	71.8
주거급여		942,080	17.8	593,200	26.1	429,900	26.9	459,540	28.3	458,800	28.2
교육급여		170,000	19.3	-	-	-	-	-	-	-	-
장애연금·장애수당		-	-	-	-	-	-	-	-	-	-
기초연금		-	-	606,000	26.7	-	-	-	-	-	-
근로소득		-	-	-	-	-	-	-	-	-	-
민간지원·국민연금 등 기타		-	3.8	406,000	17.9	-	-	-	-	-	-
채무		1,420,000	26.9	500,000	22.0	-	-	-	-	-	-
<b>수입 합계</b>		<b>4,230,740</b>	<b>100.0</b>	<b>2,271,200</b>	<b>100.0</b>	<b>1,599,600</b>	<b>100.0</b>	<b>1,621,240</b>	<b>100.0</b>	<b>1,626,800</b>	<b>100.0</b>



표 57. 사례16~사례20의 비목별 수입·지출 현황

구분		사례16		사례17		사례18		사례19		사례20	
식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492,100	28.9	218,750	13.4	319,632	22.3	206,120	11.2	578,610	30.4
	음식·숙박 중 외식·단체식제공 등	89,600	5.3	264,500	16.3	443,900	31.0	-	-	49,000	2.6
음식·숙박 중 숙박비		-	-	-	-	-	-	-	-	-	-
주 거	월 임대료	400,000	23.5	123,720	7.6	97,060	6.8	461,600	25.2	301,000	15.8
비	관리비·수도광열	32,709	1.9	44,101	2.7	117,673	8.2	128,750	7.0	97,000	5.1
보건		80,300	4.7	1,500	0.1	75,100	5.2	6,000	0.3	230,000	12.1
교육		-	-	-	-	-	-	-	-	-	-
교통		40,000	2.4	11,000	0.7	13,200	0.9	30,000	1.6	80,000	4.2
통신		49,390	2.9	127,550	7.8	133,900	9.3	261,020	14.2	72,600	3.8
의류 및 신발		20,140	1.2	9,900	0.6	5,000	0.3	20,000	1.1	76,500	4.0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54,500	3.2	20,000	1.2	50,075	3.5	9,000	0.5	35,990	1.9
오 락	인터넷 케이블TV	17,600	1.0	50,601	3.1	54,450	3.8	76,660	4.2	6,600	0.3
	문화 기타	32,600	1.9	336,000	20.6	-	-	-	-	27,000	1.4
기타상품 및 서비스		391,600	23.0	44,300	2.7	49,047	3.4	23,300	1.3	95,900	5.0
주류 및 담배		-	-	135,500	8.3	-	-	70,000	3.8	243,000	12.8
기타 대출 및 전세금 반환		-	-	100,000	6.1	-	-	542,465	29.6	10,000	0.5
저축 및 적금		-	-	-	-	10,000	0.7	-	-	-	-
비소비지출		-	-	140,000	8.6	65,000	4.5	-	-	-	-
<b>지출 합계</b>		<b>1,700,539</b>	<b>100.0</b>	<b>1,627,422</b>	<b>100.0</b>	<b>1,434,037</b>	<b>100.0</b>	<b>1,834,915</b>	<b>100.0</b>	<b>1,903,200</b>	<b>100.0</b>
생계급여		65,180	4.2	1,164,300	84.6	551,900	40.6	1,161,700	74.3	550,870	35.5
주거급여		402,000	25.6	131,720	9.6	111,740	8.2	402,000	25.7	301,000	19.4
교육급여		-	-	-	-	-	-	-	-	-	-
장애연금·장애수당		-	-	80,000	5.8	80,000	5.9	-	-	-	-
기초연금		615,000	39.2	-	-	615,000	45.3	-	-	600,000	38.7
근로소득		-	-	-	-	-	-	-	-	-	-
민간지원·국민연금 등 기타		486,720	31.0	-	-	-	-	-	-	-	-
채무		-	-	-	-	-	-	-	-	100,000	6.4
<b>수입 합계</b>		<b>1,568,900</b>	<b>100.0</b>	<b>1,376,020</b>	<b>100.0</b>	<b>1,358,640</b>	<b>100.0</b>	<b>1,563,700</b>	<b>100.0</b>	<b>1,551,870</b>	<b>100.0</b>

(단위: 원 %)

## 80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표 58. 사례21~사례25의 비목별 수입·지출 현황

(단위: 원 %)

구분		사례21		사례22		사례23		사례24		사례25	
식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516,140	6.8	604,080	23.7	275,300	8.9	631,170	29.4	779,530	34.7
	음식·숙박 중 외식·단체식제공 등	248,900	3.3	49,000	1.9	-	-	27,000	1.3	44,200	2.0
음식·숙박 중 숙박비		-	-	-	-	-	-	-	-	-	-
주거비	월 임대료	315,370	4.2	216,000	8.5	400,000	13.0	600,000	27.9	600,000	26.7
	관리비·수도광열	134,160	1.8	120,000	4.7	355,100	11.5	336,860	15.7	426,010	18.9
보건		687,050	9.1	-	-	4,000	0.1	10,200	0.5	6,000	0.3
교육		25,000	0.3	-	-	558,000	18.1	-	-	-	-
교통		709,500	9.4	23,200	0.9	77,100	2.5	134,300	6.3	35,700	1.6
통신		73,392	1.0	280,000	11.0	310,000	10.0	94,760	4.4	46,550	2.1
의류 및 신발		49,000	0.6	18,000	0.7	20,000	0.6	65,100	3.0	28,600	1.3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4,352,400	57.6	45,880	1.8	26,000	0.8	73,440	3.4	80,500	3.6
오락·문 화	인터넷 케이블TV	100,512	1.3	160,000	6.3	-	-	37,400	1.7	-	-
	기타	-	-	-	-	10,000	0.3	24,600	1.1	-	-
기타상품 및 서비스		2,900	0.0	34,480	1.4	237,000	7.7	112,290	5.2	46,040	2.0
주류 및 담배		33,600	0.4	-	-	-	-	-	-	5,200	0.2
기타 대출 및 전세금 반환		-	-	-	-	-	-	-	-	-	-
저축 및 적금		250,000	3.3	1,000,000	39.2	160,000	5.2	-	-	-	-
비소비지출		55,000	0.7	-	-	653,060	21.2	40	0.0	150,000	6.7
<b>지출 합계</b>		<b>7,552,924</b>	<b>100.0</b>	<b>2,550,640</b>	<b>100.0</b>	<b>3,085,560</b>	<b>100.0</b>	<b>2,147,160</b>	<b>100.0</b>	<b>2,248,330</b>	<b>100.0</b>
생계급여		1,155,470	48.0	1,161,700	49.1	2,506,420	82.4	1,122,580	50.5	1,166,900	51.5
주거급여		318,250	13.2	368,580	15.6	536,000	17.6	326,000	14.7	326,000	14.4
교육급여		-	-	-	-	-	-	-	-	-	-
장애연금·장애수당		835,000	34.7	835,000	35.3	-	-	775,000	34.9	775,000	34.2
기초연금		-	-	-	-	-	-	-	-	-	-
근로소득		-	-	-	-	-	-	-	-	-	-
민간지원·국민연금 등 기타		100,000	4.2	-	-	-	-	-	-	-	-
채무		-	-	-	-	-	-	-	-	-	-
<b>수입 합계</b>		<b>2,408,720</b>	<b>100.0</b>	<b>2,365,280</b>	<b>100.0</b>	<b>3,042,420</b>	<b>100.0</b>	<b>2,223,580</b>	<b>100.0</b>	<b>2,267,900</b>	<b>100.0</b>

[부록2]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비 세부 지출 내역

표 59. 사례1~사례5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비 세부 지출 내역

(단위: 원, %)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곡물	-	-	6,600	3.3	-	-	-	-	3,380	1.0
곡물가공품	31,650	14.1	6,500	3.3	10,150	9.1	26,470	6.3	8,100	2.5
빵 및 떡류	34,300	15.2	10,000	5.0	11,200	10.1	1,000	0.2	-	-
육류	-	-	47,000	23.6	-	-	-	-	-	-
육류가공품	7,500	3.3	24,800	12.5	-	-	47,980	11.5	-	-
신선수산물	-	-	6,000	3.0	-	-	-	-	6,500	2.0
염건수산물	-	-	-	-	-	-	-	-	-	-
기타 수산물 가공	-	-	15,000	7.5	-	-	32,580	7.8	20,500	6.2
유제품 및 알	81,200	36.1	2,000	1.0	4,500	4.0	1,800	0.4	-	-
유지류	-	-	2,800	1.4	3,000	2.7	-	-	-	-
과일 및 과일가공품	-	-	-	-	2,980	2.7	-	-	-	-
채소 및 채소가공품	-	-	62,400	31.3	8,630	7.8	-	-	8,080	2.5
해조 및 해조가공품	3,000	1.3	3,800	1.9	3,000	2.7	-	-	-	-
당류 및 과자류	32,500	14.4	-	-	2,600	2.3	172,080	41.2	20,300	6.2
조미식품	-	-	8,500	4.3	12,650	11.4	-	-	-	-
기타식품	-	-	-	-	-	-	-	-	251,300	76.3
주스 및 기타음료	30,900	13.7	2,880	1.4	25,980	23.4	65,380	15.7	11,000	3.3
커피 및 차	4,100	1.8	900	0.5	26,450	23.8	70,000	16.8	-	-
합계	225,150	100.0	199,180	100.0	111,140	100.0	417,290	100.0	329,160	100.0

자료: 2022년 가계부조사.

주1: 항목별 금액은 2월 18일~4월 19일까지 합산한 금액임.

주2: 지출 1순위를 분홍색, 지출 2순위를 노란색으로 표시함.

## 82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표 60. 사례6~사례10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비 세부 지출 내역

(단위: 원, %)

구분	사례6		사례7		사례8		사례9		사례10	
곡물	-	-	-	-	-	-	11,890	7.4	32,400	7.7
곡물가공품	14,800	11.7	7,000	3.8	36,260	4.4	13,500	8.4	19,550	4.6
빵 및 떡류	3,000	2.4	8,600	4.6	26,880	3.3	7,200	4.5	23,300	5.5
육류	-	-	18,940	10.2	19,850	2.4	-	-	-	-
육류가공품	-	-	-	-	-	-	-	-	-	-
신선수산물	-	-	-	-	-	-	-	-	-	-
염건수산물	-	-	3,000	1.6	10,900	1.3	-	-	-	-
기타 수산물 가공	32,300	25.5	7,780	4.2	82,900	10.0	-	-	29,900	7.1
유제품 및 알	6,500	5.1	30,040	16.2	37,840	4.6	14,530	9.1	44,080	10.5
유지류	-	-	-	-	-	-	-	-	4,800	1.1
과일 및 과일가공품	1,600	1.3	19,500	10.5	174,890	21.2	15,000	9.4	8,000	1.9
채소 및 채소가공품	32,950	26.1	35,300	19.0	30,910	3.7	43,270	27.0	67,110	16.0
해조 및 해조가공품	-	-	-	-	29,120	3.5	5,020	3.1	9,000	2.1
당류 및 과자류	1,000	0.8	8,180	4.4	135,860	16.4	17,180	10.7	8,300	2.0
조미식품	-	-	-	-	2,800	0.3	18,010	11.2	21,370	5.1
기타식품	17,500	13.8	3,980	2.1	135,090	16.4	13,000	8.1	110,080	26.2
주스 및 기타음료	9,500	7.5	1,200	0.6	76,110	9.2	1,800	1.1	31,000	7.4
커피 및 차	7,300	5.8	41,840	22.6	26,720	3.2	-	-	11,550	2.7
합계	126,450	100.0	185,360	100.0	826,130	100.0	160,400	100.0	420,440	100.0

자료: 2022년 가계부조사.

주1: 항목별 금액은 2월 18일~4월 19일까지 합산한 금액임.

주2: 지출 1순위를 분홍색, 지출 2순위를 노란색으로 표시함.

표 61. 사례11~사례15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비 세부 지출 내역

(단위: 원, %)

구분	사례11		사례12		사례13		사례14		사례15	
	원	%	원	%	원	%	원	%	원	%
곡물	2,900	0.2	-	-	-	-	-	-	20,000	6.1
곡물가공품	92,570	6.5	33,100	3.1	45,850	12.2	7,700	3.1	16,000	4.9
빵 및 떡류	58,850	4.2	10,000	0.9	11,700	3.1	-	-	13,200	4.0
육류	326,450	23.0	71,000	6.7	54,680	14.5	-	-	-	-
육류가공품	11,800	0.8	-	-	3,000	0.8	-	-	-	-
신선수산물	13,960	1.0	56,500	5.3	2,000	0.5	-	-	29,000	8.8
염건수산물	10,000	0.7	5,000	0.5	-	-	-	-	-	-
기타 수산물 가공	8,300	0.6	3,500	0.3	10,960	2.9	-	-	-	-
유제품 및 알	87,600	6.2	34,000	3.2	4,000	1.1	-	-	-	-
유지류	37,930	2.7	30,000	2.8	-	-	-	-	17,200	5.2
과일 및 과일가공품	117,240	8.3	35,000	3.3	14,000	3.7	4,980	2.0	-	-
채소 및 채소가공품	104,814	7.4	85,000	8.0	44,500	11.8	44,000	17.7	27,000	8.2
해조 및 해조가공품	32,800	2.3	24,000	2.3	12,500	3.3	6,550	2.6	-	-
당류 및 과자류	53,400	3.8	-	-	2,500	0.7	45,450	18.3	-	-
조미식품	11,500	0.8	66,000	6.2	6,980	1.9	-	-	48,740	14.8
기타식품	381,330	26.9	603,500	57.1	113,060	30.0	115,840	46.7	121,590	36.9
주스 및 기타음료	65,040	4.6	-	-	14,900	4.0	7,060	2.8	19,500	5.9
커피 및 차	-	-	-	-	36,000	9.6	16,550	6.7	17,500	5.3
합계	1,416,484	100.0	1,056,600	100.0	376,630	100.0	248,130	100.0	329,730	100.0

자료: 2022년 가계부조사.

주1: 항목별 금액은 2월 18일~4월 19일까지 합산한 금액임.

주2: 지출 1순위를 분홍색, 지출 2순위를 노란색으로 표시함.

## 84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표 62. 사례16~사례20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비 세부 지출 내역

(단위: 원, %)

구분	사례16		사례17		사례18		사례19		사례20	
곡물	20,000	4.1	-	-	69,000	21.6	-	-	35,500	6.1
곡물가공품	35,600	7.2	23,000	10.5	33,920	10.6	1,890	0.9	34,590	6.0
빵 및 떡류	33,500	6.8	-	-	16,800	5.3	-	-	26,000	4.5
육류	55,000	11.2	71,000	32.5	35,892	11.2	4,860	2.4	49,000	8.5
육류가공품	-	-	3,800	1.7	-	-	-	-	-	-
신선수산물	2,500	0.5	15,000	6.9	-	-	-	-	-	-
염건수산물	3,400	0.7	-	-	21,900	6.9	-	-	-	-
기타 수산물 가공	38,000	7.7	-	-	-	-	4,400	2.1	-	-
유제품 및 알	2,000	0.4	11,400	5.2	20,870	6.5	60,080	29.1	67,600	11.7
유지류	9,000	1.8	-	-	13,900	4.3	3,450	1.7	8,500	1.5
과일 및 과일가공품	22,500	4.6	-	-	3,980	1.2	-	-	5,000	0.9
채소 및 채소가공품	76,300	15.5	32,250	14.7	63,620	19.9	7,040	3.4	61,940	10.7
해조 및 해조가공품	-	-	-	-	-	-	2,800	1.4	7,000	1.2
당류 및 과자류	53,000	10.8	-	-	2,000	0.6	-	-	24,980	4.3
조미식품	16,800	3.4	17,200	7.9	5,850	1.8	6,000	2.9	30,000	5.2
기타식품	78,000	15.9	40,000	18.3	10,000	3.1	110,400	53.6	191,500	33.1
주스 및 기타음료	32,500	6.6	-	-	11,900	3.7	-	-	11,000	1.9
커피 및 차	14,000	2.8	5,100	2.3	10,000	3.1	5,200	2.5	26,000	4.5
합계	492,100	100.0	218,750	100.0	319,632	100.0	206,120	100.0	578,610	100.0

자료: 2022년 가계부조사.

주1: 항목별 금액은 2월 18일~4월 19일까지 합산한 금액임.

주2: 지출 1순위를 분홍색, 지출 2순위를 노란색으로 표시함.

표 63. 사례21~사례25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비 세부 지출 내역

(단위: 원, %)

구분	사례21		사례22		사례23		사례24		사례25	
곡물	-	-	12,000	2.0	-	-	-	-	52,780	6.8
곡물가공품	41,020	7.9	19,990	3.3	15,800	5.7	12,280	1.9	-	-
빵 및 떡류	95,010	18.4	87,300	14.5	7,000	2.5	-	-	86,500	11.1
육류	15,410	3.0	100,000	16.6	107,000	38.9	13,840	2.2	267,010	34.3
육류가공품	20,000	3.9	11,400	1.9	-	-	-	-	-	-
신선수산물	4,500	0.9	26,480	4.4	-	-	-	-	89,800	11.5
염건수산물	14,730	2.9	-	-	-	-	-	-	-	-
기타 수산물 가공	-	-	13,700	2.3	8,800	3.2	-	-	15,600	2.0
유제품 및 알	39,870	7.7	20,300	3.4	16,000	5.8	51,600	8.2	11,400	1.5
유지류	6,000	1.2	7,000	1.2	-	-	-	-	-	-
과일 및 과일가공품	63,990	12.4	-	-	-	-	87,360	13.8	46,790	6.0
채소 및 채소가공품	86,500	16.8	43,530	7.2	65,500	23.8	46,310	7.3	67,110	8.6
해조 및 해조가공품	3,500	0.7	5,500	0.9	6,000	2.2	-	-	-	-
당류 및 과자류	5,600	1.1	3,500	0.6	10,000	3.6	26,400	4.2	-	-
조미식품	-	-	33,700	5.6	3,200	1.2	5,400	0.9	17,040	2.2
기타식품	18,500	3.6	219,680	36.4	29,000	10.5	374,080	59.3	64,000	8.2
주스 및 기타음료	7,300	1.4	-	-	7,000	2.5	-	-	44,000	5.6
커피 및 차	94,210	18.3	-	-	-	-	13,900	2.2	17,500	2.2
합계	516,140	100.0	604,080	100.0	275,300	100.0	631,170	100.0	779,530	100.0

자료: 2022년 가계부조사.

주1: 항목별 금액은 2월 18일~4월 19일까지 합산한 금액임.

주2: 지출 1순위를 분홍색, 지출 2순위를 노란색으로 표시함.

[부록2]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비 세부 지출 내역

표 64. 주요 메모

구분	내용
사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 2만원 넘게 썼다. 하루에 이렇게 많이 쓰다보면 생계비가 남아나질 않을 것 같다/하루에 쓰는 돈이 만원 이상 나간다</li> <li>• 담배를 끊어야 되나?/ 담배를 끊어보자/ 담배를 끊고 싶네~</li> <li>• 로또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서 슬프다</li> <li>• 저녁까지 뭘 먹어야 고민하다 결국은 라면, 김밥!/ 한 달 반 만에 중국집에서 볶음밥 먹은 날</li> <li>• 가게부쓰면서 함부로 밥 먹는거 외식도 잘 안 했지만 병원비로 인한 턱없는 생활비. 수급자도 돈 신경 안 쓰면서 밥을 먹고 싶습니다</li> </ul>
사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주일 내내 방에만 있다가 수급날이라서 한 번 바람쐬고 오니 괜찮다/ 천장만 쳐다보자니 웬지 그렇구만해서 외출(경마장) 갔다 오니 기분전환이 됐구만</li> <li>• 오늘은 웬지 쓸쓸한 하루가 멍하니 하루가 지나갔군요/ 오늘 하루도 의미없이 하루가 지나가는군요/ 오늘 하루도 방에서 지내기만 했고, 하루가 지루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안 가는 의미 없는 하루였다/ 오늘은 하루가 의미 없이 시간만 흐르는 마음이 우울한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 종일 방안에만 있으니 무료하군요/ 하루종일 방에만 있어요. 사람이 멍해지면서 아무생각이 없군요.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해야되는데 모든게 그러하네요/ 문화생활(TV). 외출을 안 하니 심심하군요. 해서 TV시청만 하루종일 했더니 눈이 침침해지는군요...</li> <li>• 사남이 동생 왔다 갔음. 중국집 요리시켜서 식사대접 했음. 빌린돈도 계산 했음. 마음이 홀가분함</li> <li>• 음력 3.15일 생일이구만 뭐 생일상도 차려줄 사람 없어 좀 처량하군요. 어찌되든 하루는 기분 좋게 가는군요</li> <li>• 지난 2개월 동안 일기장을 썼어요. 학교다닐때 이후 처음으로 글씨를 써보니 그론대로 괜찮네요. 글을 잘 써는지 저 나름대로 성의 것 써네요.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li> </ul>
사례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시다. 가게부 끝나는 날 몸무게 5kg 증가할게요</li> <li>• 미치겠다. 막걸리도 줄이게 하다니...</li> <li>• 아프다 많이. 설사. 복통/ 죽을 먹고나면 소화가 잘 안돼서 막걸리 먹는 양이 줄었음. 소화제를 먹고 나면 서너시간 후에 설사가 나옴. 3~4주 전부터</li> <li>• 무의미하다/ 지겨운 하루가 또 갔다. 내일은 희망이 있으려나/ 그냥 심심했다. 하루 종일</li> </ul>



<p>사례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까지 다리가 아픈데 언제까지 풀릴지 알 수 없고 많이 아픈 다리는 힘을 좀 덜 쓰게 오른쪽 다리를 서 있을 때 힘을 더 준다.</li> <li>• 주말 날씨에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마을에서 동네 친구와 막걸리 한 잔 했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더 먹지 못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li> <li>• 병원 진료 때문에 아침도 굶고 일찍 잤었다. 잤다 온 후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 참가했었다. 너무 오늘 몸이 고단하고 피로가 많이 겹쳤다.</li> <li>• 오래간만에 동묘 전통시장에서 누룽지차, 이어폰, 손바닥 거울, 빗을 사고 음악을 들으면서 동묘시장을 돌아다녔다. 얇은 윷도리도 하나 사고 장서는 것을 구경도 좀 하고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와 쉬면서 유튜브를 이어폰 끼고 좀듣고 뺐다.</li> </ul>
<p>사례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어있던 709호실에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는 50대 독거남이 2.28.에 입주한다. 나와 동종업종이다. 7층에만 독거세대가 10가구...ㅠㅠ</li> <li>• 약의 양이 많아서일까? 속이 쓰린 날이 많아진다.</li> <li>• 오토바이로 노인복지관에 다녀왔다. 크랭크베어링 소리가 점점 커진다. 크랭크가 아주 망가지면 엔진이 정지할 것인데 수리비가 적게 나오면 45만원, 보링을 하게 되면 80만원... 킥일을 접고 자활근로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이다.</li> <li>• 성수사거리에서 신호위반 단속돼 과태료 5만 부과됨. 사실 확인을 위해 중앙경찰서에서 동영상을 확인하니 사거리를 통과한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를 지나서 정지해도 신호위반이란다. 수급자 50%감액으로 25,000원으로 낮췄다. 정말 오토바이 타지 말라는 계시 같다.</li> <li>• 한일반점 사장님으로부터 석관동 "백마오토바이"를 알게 되었다. 오토바이를 수리해서 킥일을 해야 할 것 같다. 잘 못 알고 있었던 자활근로 때문에.</li> <li>• 녹번동쪽으로 가면 찾아가던 한식부페 집에 오랜만에 들렀다. 근데 6,000원이던 식대가 7,000원으로 올라 있었다. 7,000원은 부담이 돼서 파배기로 대충 해결하고 집에서 늦은 점심을 해결한다.</li> </ul>
<p>사례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리 통증으로 조금은 우울함/허리 통증으로 하루가 무겁고 힘들/ 허리 통증으로 물건을 드는 것이 매우 힘들/허리통증으로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 답답하고 우울/허리통증이 다리로 번지는 것 같아 불안하고 걷기도 힘들</li> <li>• 공과금을 밀리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결제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li> <li>• 돼지고기 한근, 사과 1봉(10개) =언니의 지원</li> <li>• 내 몸의 통증(아픔)이 무서워진다.</li> </ul>
<p>사례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딸기가 너무 먹고 싶어 사러 갔는데 너무 비싸서 그냥 왔어요. 아마 올해는 딸기를 몇 번이나 사먹을 수 있을까요.</li> <li>• 내 명의 폰이 아니라서 요금을 낼 때마다 속상하다. 내 것이라면 할인 혜택 받아서 덜 낼 수 있을텐데. 돈이 웬수다.</li> </ul>

## 88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달 내는 월세가 낼 때 마다 아깝다. 당연한 현데 20~25만 정도면 고기나, 과일도 사먹었을 텐데..</li> <li>• 이러다가 영양실조 걸리겠다. 병원에서 빈혈 있다는데...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당뇨라서 골고루 먹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li> <li>• 눈을 뜬거 보니 죽지 않고 살았나 보다. 살겠다고 밥과 약을 먹는다. 치아가 마니 부실해서 씹는 것이 어렵다. 살아가는 일이 제일 힘들다. 내가 아파 병원에 있으면 와줄 사람은, 돈 한 푼 빌려줄 사람은 없으니 한푼이라도 아껴야 한다. 매일 끼니 때우는 것도 힘들다. 그 밥에 그 반찬들</li> <li>• 20일 쟤 고기 없이 풀밭에서 밥먹었다. 기운이 없다. 만사가 귀찮다.</li> <li>• 수급비 나올 때까지 20만원은 남겨야한다. 그래서 오늘은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런데 브로드 밴드 요금 22,000이 나왔다. 할 수 없이 나가서 입금만 시키고 왔다.</li> <li>• 돈을 모으려고 해도 맘대로 되지 않는다. 혈압기가 고장 나 거금들었다. 월세 350,000 폰 52580 유선 22000 오메가3 22900 루테인 21140 검사지 17000 소독솜 3000 주사비는(옛날에 사둔 거 있음)=488620원 한 달에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다. 890850-488620=402,230 남는 거로 한달 살아 가는거다</li> <li>• 개나리 벚꽃 목련이 활짝 폈구나. 내 몸과 내 맘이 편하지 않으니 화려한 꽃은 이쁘지 않구나</li> </ul>
<p>사례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들이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치킨 대신 돼지불고기를 해줬다. 엄마로서 아이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든다. 돼지불고기 가족과 함께 맛있게 먹었다. 어머님과 두 아들한테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 때문에,,</li> <li>• 매일 쓰는 가게부지만 항상 걱정부터 앞선다. 오늘처럼 아이들이 치킨 먹고 싶다고 치킨 시켜주라고 하면 엄마인데... 부담이 많이 느낀다. 하지만 아이들과 어머님이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흐뭇하고 기분이 좋다. 나도 하루 빨리 가난에서 해방되고 싶다. 우리 아이들한테 풍족하게 먹이고 싶다.</li> <li>• 아르바이트로 선거운동 시작한지 6일 쟤 너무 힘들다. 추운 날씨에 난방비 아낀다고 밤에 보일러를 20도에 맞춰놓고 잤더니 여기 저기가 다 쑤신다. 몸살이 날려고 한다. 아프면 안되는데...</li> <li>• 오늘부터 나의 보물인 큰아들 현이가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일본어 교재를 사서 열심히 공부 모드로 들어갔다. 참 기특하고 미안하기만 하다. 다른 친구들은 학원도 다닌다는데 엄마가 학원에 보내주지 못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 뿐...</li> <li>• 해물찜 소자라서 조금 아쉽지만 가족이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소소한 행복인 것을~~ 어머님과 아이들 함께 가까운 곳으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 현재는 마음만 있을 뿐... 언제쯤 갈 수 있을까?/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치킨 1마리로 4명이 조금씩 나눠 먹었다. 한참 먹어야 하는 나이인데도 불평불만 가지지 않고 맛있게 먹어준 현이, 민이 고맙다/ 자장면 3그릇에 행복한 우리집~~~ 열심히 살아야 한다.</li> </ul>

<p>사례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급여가 나와 1개월치 담배와 양념을 마련했다. 헛된 소비가 없이 한달 한달을 살아 나가야 한다</li> <li>• 삼양동 사는 동생이 찾아와 점심을 같이 먹었다. 생활이 어렵다고 말하기에 나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며 참고 아끼며 살아가라고 했다/ 가까운 동생과 함께 도봉산에 갔다왔다. 어렵다고 하기에 같은 돈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왜 쪼달리며 사냐고 이제는 계획을 세워 생활하라고 쓴소리 했다.</li> <li>• 이웃집에서 부모님 설 차례상 비용 빌린돈 50만원을 갚았다. 매년 설, 추석, 부모님 기일에 140만이 나간다. 월 10만원씩 모아 두어야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걱정이다. 최대한 아끼며 노력하며 살아야겠다./ 이달부터 매월 10만원씩 저축해놓아야 한다. 추석 차례상과 어머니님 기일상 차림비를 마련해놓아야 한다.</li> <li>• 이웃동생들이 내일 인천에 놀러가자고 하는데 못간다 했다. 같이 가면 적어도 3만원 정도는 소비하기에 거절할 수밖에 없다./ 오전에 우식이 동생이 양평에 같이 가자는데 거절했다. 움직일 수가 없다. 그놈의 돈/ 동네 동생과 함께 도봉산에 놀러가 산행을 하고 점심은 짬뽕과 짜장면을 먹었다. 합계가 18000이다. 서로가 부담없이 각자 내자고 했지만 마음은 쓸쓸하다.</li> <li>• 남은 담배 6갑을 팔았다. 담배 대신 과일을 먹으며 건강에 신경쓰기로 했다.</li> <li>• 엉치뼈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다. 마음이 불안하니 몸도 이상이 생기나?</li> <li>• 매일 아껴가며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주거비가 나오니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 돈이다. 돈에 의해서 감정이 달라지니 참.</li> </ul>
<p>사례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번달 남은 재료로 카레 했다. 너무 많이 해서 보기만해도 질린다. 라면 먹고 싶다.</li> <li>• 컴퓨터 고장 할부로 고침!(할부 40만원) 생활비 다 씀 -10000 그래픽카드 20만 보드 10만 랜카드 10만 (두개 8기가)</li> <li>• 생활비 나오는 날 돈이 스치듯이 내 호주머니서 빠져나갔다</li> </ul>
<p>사례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주 느끼지만 오늘은 애들(강아지) 닭도 사줄수 있고 동생이랑 처음으로 초밥도 먹을 수 있어서 조금 좋습니다.</li> <li>• 오늘은 돈을 너무 많이 썼다. 그래도 줄돈이고 살것인 것, 마음이 복잡하다.</li> <li>• 복권 걸리면 좋겠다</li> <li>• 집에 있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도 좀 아파서 지루하고 긴 하루다.</li> <li>• 모임에 나갔다. 한 달에 한번인데 회원들을 만나서 기분이 좋았다.</li> </ul>
<p>사례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필수품 너무 올려서 구입하기가 너무 무서움 너무 힘드네요.</li> <li>• 반찬 6팩에 2만원하였는데 3천원 올림, 식자재 마트도 대부분 1천~2천 올림</li> <li>• 생일이라 미역국은 먹네요 마음이 참... 흠</li> </ul>
<p>사례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이 안 좋으니까 하루가 힘들고 해도 수급자들 다 힘들어요. 그래도 참고 보내요. 환자들이니까요/ 마음이 우울하고 슬픈 생각 음</li> </ul>

## 90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p>악 듣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 즐거워다. 후배들 하고 같은 시간 보내서 혼자 외로운 마음인데 즐거운 시간 보냈다.</li> <li>• 그래도 살아볼려고, 한약 달여 먹으려고, 기관지 천식이 좋다하기에 사는게 무엇인지 죽지 못해 사는 것 같다.</li> <li>• 문화누리카드, 수급자에게 주는 것을 2가지를 만들어주시면 합니다. 1) 문화누리카드 2) 교통카드 2가지 해서 해당자가 가져갈 수 있게 100000원을 두가지 해주세요/ 노인들에게 교통카드을 만들어 주시면 합니다. 버스비/ 노인들은 문화카드을 교통비에 쓸 수 있게 해주시면 합니다.</li> <li>• 아프면 희망이 없고 고달프다. 수급자도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생계비 나온 날: 건강해야 희망이 있는데</li> <li>• 혼자 사는 것이 참 슬프다. 늙으면 죽어야하자미나 죽지 못해 살아가는 심정 누가 알까.</li> </ul>
사례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휠체어 배터리 교체 650,000원. 다음주 화요일까지 입금해야됨/ 휠체어 배터리 때문에 돈을 아껴쓰야한다 다짐함</li> <li>• 이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오늘 이사하는 날이다. 너무 좋아서 잠을 못잤다/ 이사하니까 살 것이 너무 많다</li> <li>•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li> <li>• 임대료가 많이 나와서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인 증명서를 LH에 제출하고, 홈플러스에 가서 장보고 왔다.</li> </ul>
사례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햄곰제(피죤) 가격이 10,900원 하던 때가 있었는데,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변하는 것 같다. 그에 비해 수급비는 너무 더디게 오르는 것 같다.</li> <li>• 코로나19로 가족과 만난지 오래됐다. 언니의 생일이라 생일케이크 쿠폰을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보냈다. 내가 먹을 것을 아끼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의 기념일은 챙겨주고 싶다.</li> <li>•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코로나19로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되도록 집에 머무르는 편이다. 움직이면 필연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므로...</li> <li>• 육창 때문에 단백질 셰이크를 꾸준히 먹고 소고기도 가끔 사먹는데 확실히 가격이 부담스럽다. 많이 부담스러울 때는 뽕데기로 대체하기도 한다/ 복지관을 통해 주 1회 반찬지원을 받는 것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 밑반찬이 어느 정도 해결되니 육창을 위해 소고기도 가끔 사먹을 수 있다/ 반찬지원으로 오는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가 많이 없는데, 파나 양파를 넣고 끓이면 두기는 충분히 먹을만한 양이 된다/ 외부활동을 많이 할 때는 허기가 많이 진다. 여러 번 움직이면 차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식비 지출은 부담스러워서 되도록 집에서 밥을 먹고 외부활동을 한다.</li> <li>• 어려서부터 소화기관이 약했다. 천천히 꼭꼭 씹어먹어도 자주 체하는 편이라 가스활명수를 자주 마신다. 10개들이 한박스씩 사다두는데 가격이 부담스럽다. 2월 27일에 한박스 사다왔는데 벌써 다 마셨다. 한박스에 9500원인데..</li> <li>• 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진입 가능한 집은 아파트 밖에 없다. 가장 작은 평수가 16평인데, 월세는 30만원</li> </ul>

---

이다. 주거급여와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아파트 관리비도 한달에 대략 10만원을 잡아야 한다. 도시가스비를 포함하면 벌써 50만원 이상 지출되는 것이다.
---

---

자료: 2022년 가계부조사.

**발제 2.**

# 가계부조사 참여자 인터뷰 및 활동가 FGI를 토대로 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성철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1. 배경

### 1) 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제1조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제도 내로 포괄하여 충분한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시행 이래 부양의무자기준, 낮은 기본재산액과 과도한 재산의 소득환산율, 근로능력평가 등 낮고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비현실적인 급여 보장수준을 유지하며 “대상 포괄성” 과 “급여 충분성”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한국의 빈곤율<sup>2)</sup>은 16.3%로 높은 반면 2021년 12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자수는 인구 대비 4.6%에 불과하며 4.6%에는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제외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수는 인구 대비 약 3%에 그친다. 복지급여에 권리성을 담고 빈곤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큰 포부를 갖고 시작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제 빈곤층의 1/5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시행된 이후 2015년 6월까지 절대적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년, 빈곤통계연보)

빈곤선인 최저생계비를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으로 사용했다. 2015년 7월 맞춤형개별급여로 개편되며 상대적 빈곤선인 기준중위소득을 선정기준으로 도입, 급여별료(생계·의료·주거·교육) 선정기준을 달리 정했다. 상대적 빈곤선 도입이라는 개념적인 도약의 시도였으며, 시민사회단체와 빈곤 당사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과 형식과 동일했다. 하지만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념과 형식의 변화만 있었을 뿐 낮고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부양의무자기준 등 기존 선정기준이 개선되지 않았고 급여별 선정기준이 낮게 정해지며 여전히 빈곤층을 제도 내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급여보장수준 역시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수급자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수급권자 당사자의 입장에서 현재적으로 분석하여 해결하기 위해 두달간 25가구의 가계부조사를 진행했다.

### (1) 2022년 선정기준과 보장수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6월까지 수급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시 탈락, 미만일 시 수급권을 보장했다. 최저생계비에서 타지원액과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최저생계비의 약 80%)가 현금급여로 지급되었고 그 중 약 18%가 주거급여라는 명목으로 지급됐다.

당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 가장 큰 목표는 기존 최저생계비를 단일 기준으로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였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탈수급 요인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2015년 7월 개편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선정기준을 각기 달리 마련 및 다층화하고 주거급여 보장수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2022년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은 다음과 같다.

## 94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표1>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2022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계급여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생계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만큼을 제외한다.

### ○의료급여

기준과 동일

### ○주거급여

전국을 4급지로 분류, 가구 규모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과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의 연4% 환산액)부담을 고려한다. 생계급여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는 자기부담금을 부과한다.

<표2> 2018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 외)



○ 교육급여

<표3> 교육급여 보장수준

학교급	지원금액
초	331,000
중	466,000
고	554,000

\*시도교육청의 저소득층 교육비지원사업에 따라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음.

○ 해산장제급여

<표4>해산장제급여 보장수준

급여	금액
해산급여	700,000 (쌍둥이 출산시 1,400,000)
장제급여	800,000

(2)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

이전 최저생계비는 3년에 한 번 전물량방식의 계측조사를 실시하여 인상률을 결정했고 비계측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최저생계비는 법 제2조 ”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이라고 정의되어 있지만, 기초생활제도 급여로 한 달을 사는 수급자들은 문화적인 삶은 고사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비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2017년 정부에서 전물량방식으로 계측한 최저생계비 조사<sup>3)</sup>에 따르면 44세 가장은 111,153원 동절기 신사복 2벌과 98,803원 춘추용 신사복 2벌을 10년 동안, 41살 주부는 각 37,068원 춘추용과 동절기 스커트를 10년, 5,659원 브래지어 2벌을 3년 동안, 14세 자녀(남)는 35,649원 동절기 잠바를 2년 동안, 11세 자녀(여)는 2,150원 팬티 9장을 3년 동안 입어야 한다. 네 가족에게 허용되는 외식비는 3개월에 한번 46,000원이다. 2000년대 중반 핸드폰 보유율이 80%이상으로 높았음에도 2011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시점에서야 핸드폰 비용이 반영됐다. 그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0년 당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0%로 출발한 최저생계비가 2010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30% 수준으로 하락했다.

3) 김태완 외(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건사회연구원)

개별급여 도입과 상대빈곤선 확대의 요구는 기존 낮은 최저생계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목표에 미달하는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고수했다. <표5> 2015년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의 관계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급여는 기존 차상위 계층을 커버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대폭 확대되었다는 주거급여는 고작 8% 늘어난 수준이다. 이들은 모두 자기부담금 적용 대상자라 주거급여 전액을 수령 할 수 없다. 의료급여는 기존 최저생계비와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고, 생계급여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표>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의 관계 (2015년, 보건복지부)

준거	소득인정액기준	비교금액	4인가구(만원/월)
교육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최저생계비의 약 126.5%	211.1
주거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43%	최저생계비의 약 108.8%	181.6
의료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최저생계비의 약 101.2%	168.9
생계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28%	최저생계비의 약 70.9%	118.2
(구) 차상위 기준	최저생계비 120%	기준 중위소득의 약 47.4%	200.2
(구) 수급 기준	최저생계비 100%	기준 중위소득의 약 39.5%	166.8
(구) 생계급여 기준	최저생계비 80.9%	기준 중위소득의 약 32%	134.9

기준 중위소득 도입의 목표는 전체 인구의 상대적 경제수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기존 최저생계비 수준의 낮은 단계에 머물렀다. 기준 중위소득이 도입된 이후 인상률은 오히려 더 낮아졌다. 최저생계비 계층 조사가 최초로 시작된 1999년도부터 2015년 6월까지 최저생계비 평균 인상률은 3.90%였던 반면, 개정 이후 인상율은 2.80%로 하락했다.

<표6> 2000년 - 2015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전) 최저생계비 인상률

년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인상률
2000년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3.0
2001년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3.0
2002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3.5
2003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3.0
<b>2004년</b>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3.5
2005년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b>7.15</b>
2006년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3.0
<b>2007년</b>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3.0
2008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b>5.0</b>
2009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4.8
<b>2010년</b>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2.75
2011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b>5.6</b>
2012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3.9
<b>2013년</b>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3.4
2014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b>5.5</b>
2015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b>2.3</b>
<b>평균인상률</b>						<b>3.90</b>

<표7> 2015년 이후 기준중위소득 40%(의료급여 기준) 인상률

년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인상률
2015년 7월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016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4.00
2017년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1.73
2018년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1.16
2019년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09
2020년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94
2021년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8
2022년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5.02
<b>평균인상률</b>						<b>2.80</b>

### (3)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문제점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차년도 인상률을 정하게 되어있다. 차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최근 3개년도 통계자료의 경상소득의 중앙값에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실제 매년 결정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최근 3개년도 통계자료의 평균증가율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2017년 8월 당시 문재인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통해 급여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크게 두가지였다. 첫 번째로 기준중위소득 산출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이는 가계동향조사를 가계지출조사로 특화하며 소득조사를 대폭 간소화되고, 소득조사를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일원화하는 국가 통계 개편에 따른 조치였다. 두 번째는 가구균등화지수 개편이었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한 뒤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당시 기준으로 4인가구를 1로 봤을 때 1인가구는 0.37, 2인가구는 0.63의 가구균등화지수가 적용됐다.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시의 가구균등화지수가 1인, 2인가구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계획이었다.

2020년에 적용될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결정할 당시(2019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변경된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를 토대로 인상률을 산출했어야 했다. 하지만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섞어 평균 인상률의 중간값으로 차년도 인상률을 산출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산출되는 중위소득이 가계동향조사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자, 국가 통계가 변경되어 소득조사를 대폭 축소한 가계동향조사를 재탕한 것이다.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예산에 맞춘 결정이었다.

다음 해 2021년에 적용될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결정할 당시, 통계자료를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완전히 변경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필요 인상률이 12.49%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3개년도 통계자료의 평균증가율 4.6%를 더하면, 산출방식에 근거한 인상률이 약 17%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통계자료 변경에 따른 필요 인상률 12.49%와 가구균등화지수 현실화 방안 둘 모두를 6년에 걸쳐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또

최근 3개년도 통계자료의 평균증가율 4.6%에 대해, 코로나 경제위기를 근거로 1%만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실제 필요한 인상률은 17%였지만 2.68%로 낮게 결정된 것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삶의 질 상승에서 수급자를 배제하는 결정이었으며, 경제가 나쁠수록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식을 정반대로 뒤집은 반복지적 결정이었다.

그리고 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작년 대비 5.02% 인상됐다. 정부는 이를 두고 역대 정권 최대 인상률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 역시 예산에 맞춘 고무줄 산식에 의한 결정의 연장이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논의 당시 최근 3개년도 통계자료의 평균증가율은 4.3%였으나, 어떤 근거도 없이 70%만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통계자료 변경에 따른 필요 인상률 1/6이 더해져 5.02%가 된 것이다. 정해진 산출방식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역대 최대라는 홍보는 기만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정이 가능한 이유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방식과 관련이 깊다. 기준중위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이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된다. 수급(권)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단 한 명도 없고 회의록조차 공개되지 않는다. 수급(권)자들은 발표되는 인상률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정된 수치인지 알 방법이 없고, 어렵다. 누구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소득의 중앙값과 아래와 같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아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9년 자료이다. 지금과 3년의 차이가 있음에도 1인 가구 기준 60만원, 31%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8> 2019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소득 중앙값과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간 격차

(단위 : 만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년 가구소득 중앙값(A)	254	413	526	636	737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B)	194	326	419	512	602
<b>격차(A-B)</b>	<b>60</b> <b>(31%)</b>	87	107	<b>124</b> <b>(24%)</b>	135
2019년 가구소득 중앙값의 30%(A')	76	124	158	191	221
2022년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B')	58	97	125	153	180
<b>격차(A'-B')</b>	<b>18</b> <b>(31%)</b>	27	33	<b>38</b> <b>(24%)</b>	41

\*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년 가구소득 중앙값(A):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4인가구 가구소득 중앙값을 기준으로 가구균등화지수(1인가구 0.4, 2인가구 0.65, 3인가구 0.8272, 5인가구 1.1592)를 곱함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77개 복지제도 선정기준과 한국의 빈곤선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75%이하. 한부모가족 복지제도에 따른 양육비 지원의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52%이하이다. 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도 기준중위소득을 선정기준으로 사용한 바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은 낮은 수급비로 수급자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복지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를 감추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낮은 기준중위소득은 빈곤과 불평등을 감추는 동시에 심화시키는 두 가지 문제를 파생한다.

## 2. 가계부조사의 목표와 방식

기준중위소득의 30%로 낮게 정해져 있는 생계급여 최대 보장수준이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을 실제 수급당사자의 입장에서 밝히기 위해 두달간 전국 25가구 수급가구의 가계부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맞춤형 개별급여가 실시됨에 따라서 주거급여가 신설 및 운영되고 있지만, 주거 유지에 필수 지출비용인 광열비와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주거급여의 지역별 최대 급여보장수준인 기준임대료와 지역 환경에 따른 편차를 고려하기 위해 충북 옥천, 대구, 부산에 거주하는 수급가구를 포함한 전국의 25가구가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두 달간 가계부를 작성하였고, 가계부 작성기간 동안 담당 활동가들이 가계부조사 참여가구를 주 1회, 2회 방문 및 동행하며 가계부 작성상황을 점검하였다.

두달간의 가계부작성을 마친 뒤 서울 3가구, 옥천 1가구, 대구 1가구 총 5가구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가계부에 드러나지 않는 수급가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활동에 참여한 18명의 활동가 중 10명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FGI(집단심층면접)을 각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번호	지역	가구	임대형태	점유형태	성별	연령	장애여부	질병여부
1	1급지	1인	공공임대	보증부월세	남성	44		당뇨, 희귀난치질환
2	1급지	1인	공공임대	보증부월세	남성	62	지체	디스크
3	1급지	1인	공공임대	보증부월세	남성	71	시각	관절염, HIV
4	1급지	1인	공공임대	보증부월세	남성	36		위장병, 정신질환
5	1급지	2인	공공임대	보증부월세	남성	70		치과질환
6	1급지	1인	공공임대	보증부월세	남성	64	지체	혈압, 당뇨
7	1급지	1인	공공임대	보증부월세	남성	62		혈압, 당뇨
8	1급지	1인	공공임대	보증부월세	남성	56	뇌병변	관절염, 위장병
9	1급지	1인	공공임대	전세	여성	54		위장병, 정신질환
10	1급지	1인	민간임대	보증부월세	여성	63		혈압, 당뇨
11	1급지	4인	공공임대	전세	여성	44		신장질환
12	1급지	1인	민간임대	보증부월세	남성	72		관절염, 디스크
13	1급지	1인	공공임대	보증부월세	남성	43		간질환, 혈압
14	1급지	2인	공공임대	보증부월세	남성	34	지적	당뇨, 안질환
15	1급지	2인	공공임대	보증부월세	남성	72		중풍, 심장질환
16	3급지	1인	민간임대	보증부월세	남성	71		당뇨
17	3급지	1인	공공임대	보증부월세	남성	67	지체	알콜
18	3급지	1인	공공임대	보증부월세	남성	71	청각	
19	3급지	1인	공공임대	보증부월세	남성	41		혈압, 디스크
20	3급지	1인	공공임대	보증부월세	남성	75		혈압, 디스크
21	3급지	1인	공공임대	보증부월세	여성	48	뇌병변	디스크
22	3급지	1인	공공임대	보증부월세	남성	46	뇌병변	
23	3급지	3인	공공임대	전세	여성	50		혈압, 디스크
24	4급지	1인	민간임대	보증부월세	여성	50	지체	치과질환
25	4급지	1인	민간임대	보증부월세	여성	40	지체	

### 3. 가게부와 인터뷰를 통해 본 수급가구의 삶

#### 1) 낮은 급여가 침해하는 권리

##### (1) 낮은 식비지출과 건강한 식생활 포기

2022년 수급가구 가게부조사에 참여한 1인가구(21가구)의 월평균 식비는 외식비를 포함한 264,817원으로, 하루 평균 8,827원이다. 가게부조사 참여자들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식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있었다. 참여자1은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했을 때 다른 비용을 조정할 수 없으니 식비를 줄여 메꾼다고 했다. 참여자5 역시 식비를 흥청망청 쓰다보면 공과금이나 통신비 연체로 인한 빚을 질 수도 있으니 먹고 싶은 것을 최대한 참으며 대체할 만한 것을 찾는다고 했다. 6,000원짜리 짜장면을 한 번 먹는 대신 1,200원짜 짜파게티를 사다가 두끼 먹는 식이다. 가전제품이나 의료기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보장구 소모품 교체, 비급여 치료를 받는 등의 불특정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식비가 가장 유력했다. 참여자2는 생활비가 모자랄 때 장보러 가는 횟수를 줄이고 음식에 넣을 재료를 줄이는 식으로 산다고 했다.

식비지출은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가게부조사 참여자들은 절대적으로 적게 책정되어있는 생계급여로 인해 건강한 식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여자19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식자재와 반찬값이 많이 인상되어 부담된다고 했다. 참여자19는 점심과 저녁, 하루 두 끼를 먹는다. 점심은 주로 김치와 밥을 먹고 시장에서 산 멸치와 각종 장아찌 반찬을 함께 먹는 날도 있다. “사람이 김치만 먹고 살 순 없으니” 종종 시장에 들러 멸치와 각종 장아찌 종류의 반찬을 구입한다고 했다. 작년 네 팩에 1만원하던 반찬값이 올해초 2만원으로 두배 인상됐다. 그리고 4월 다시 2만8천원으로 8천원이 인상됐다. 가격이 인상되면 방법은 하나다. 같은 가격의 다른 식품을 구입하거나 쪼개서 먹는 식이다. 참여자19는 상환 중인 채무가 있어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참여자19가 가게부를 작성한 61일 중 지출이 있는 날은 10일에 불과했다. 51일 지출이 없었고 하루를 세끼로 계산했을 때 183번의 식사 중 라면이나 우유를 제외한 밥을 먹은 횟수가 50번이 채 안됐다.



“반찬 사기도 너무 힘들어요. 반찬값이 작년보다 너무 많이 올라 가  
지고, 지금 제가 수급비 받으면 김치 10kg사는데 그걸로 한 달을 버티거든  
요, 수급비 나올 때까지. 그거 김치 그냥 10kg짜리 하나 사고 아니면은 그  
냥 팩으로 해가지고 (반찬) 4팩에 1만 원이었었는데, 지금은 4팩에 2만 원  
씩 받거든요. (종류는) 장아찌나 아니면 멸치 보통 시장에서 파는 거. (2만  
원어치 사도) 양이 얼마 안 되죠.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할 수밖에 없죠. 솔직히 사람이 김치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사  
람이니까 먹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참여자1은 심한 몸 떨림으로 인해 화기를 다루기 힘들어 복잡한 요리  
를 해먹을 수는 없지만 계란후라이나 햄을 구워 먹는다. 혼자 살면서 해  
먹는게 귀찮아진 것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 계란값과 반찬값이 많이 올라  
서 집에 있을 땐 주로 라면을 먹는다. 식비지출이 부담돼 무료급식소를  
자주 이용하는 참여자4는 코로나19로 인해 무료급식소 일부가 문을 닫자  
라면을 주식으로 먹고 있다고 했다. 참여자4는 가게부를 작성하는 두달동  
안 32번의 식사를 라면으로 해결했다. 참여자20과 참여자26도 두달동안  
각 26번, 24번의 식사를 라면으로 해결했다.

“식사를 집에서 예전에는 쌀(밥)을 많이 해먹었는데, (요즘은) 그냥  
라면 정도만 ... 반찬이 금방 떨어지니까, 거의 라면으로 때우고 있어요.”

주로 점심을 밖에서 사먹는 참여자7은 3천원짜리 짜장면, 4천원짜리 짬  
뽕과 같이 저렴한 음식점을 찾는다. 참여자17 역시 5천원짜리 칼국수, 백  
반집을 찾았다. 1인가구 기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58만원,  
여기서 광열비, 관리비, 통신비, 인터넷, 채무상환, 병원비와 같은 고정비  
용을 제외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는다. 최근 물가상승은 분명 수급자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급비에 갇힌 삶은  
물가에 민감하지 않았던 날이 단 하루도 없다. 언제나 이전보다 많이 오  
른 식자재, 반찬은 사는 것을 포기하거나 같은 양을 더 쪼개서 먹어야 했  
다.

참여자25는 육류와 채소 등 다양한 식자재를 구입하며 가게부조사에 참  
여한 이들 중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육창으로  
인해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기를 사 먹기에 빠듯한 비용이

지만 육창을 방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다. 필수지출이라고 해서 안정적으로 지속해 온 것은 아니다. 참여자25는 복지관에서 반찬배달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신선식품을 사야할 필요가 줄어들자 이를 최대한 단백질 섭취에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특성 상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도 지출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다. 한팩에 160g 포장되어 있는 소고기를 여러차례에 나눠 먹는다.

“저는 다른걸 포기하고 식비에 몰빵하는 편이거든요. 오로지 나의 생각은 육창, 단백질을 먹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두부라든가, 번데기라든가 이런 것도 먹어요. 먹는데, 두부 같은 경우는 사 왔을 때 시간이 지나면 빨리 쉬는 경향이 있고, 물론 소고기도 그렇지만 소고기는 얼리니까. (생각이) 육창에 딱 맞춰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만 몰빵하는 거예요. 먹는 데에다가.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먹는 양이 솔직히 되게 많지가 않아요. 소고기를 사면 세, 네 점? 자른 거. 그런데 많이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힘들겠죠.”

### (2) 부담스러운 광열비, 관리비 지출

가계부조사에 참여한 25가구의 월평균 광열·관리비는 75,971원이다. 가구별로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전기·수도 등)이 다르기에 정확하게 분리할 수는 없지만 관리비는 평균 49,934원 이를 제외한 광열비는 평균 26,037원이다. 2022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나는 연료비 154,000원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감면·할인과 일부 가구에 에너지바우처가 적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소지출하고 있다.

광열비는 주거 유지에 필수지출이지만 낮은 생계급여에서 충분한 광열비 지출은 일상에 큰 부담이 된다. 가계부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가구가 광열비 지출을 포기하며 살고 있었다. 참여자1은 작년 겨울 난방비가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적절한 난방을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가스비가 부담되어 거의 난방을 틀지 않았다. 가스는 온수 용도로만 사용했다. 여름철 전기사용도 마찬가지다. 몇 년 전 큰마음 먹고 중고 에어컨을 구입해 설치했지만 정말 더운 열대야 시기 땀을 식히는 용도로 3~4분 정도만 튼다고 했다.

“겨울에 난방비 거의 안 냈어요. 많이 내봤자 2천 얼마밖에 안 냈어요. 그냥 일주일에 거의 한 번 정도 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불이 있으니까 난방은 거의 안 트는 거죠. 꿩꿩 싸매고 춥게 자는 것도 적응이 된 것 같아 가지고 거의 안 틀어요. 에어컨도 보면 진짜 더울 때 3분 정도 잠깐 땀 식힐 정도만 틀어 놓는 것 같아요. 그래도 더우니까 찬물로 샤워를 하는데 잘 안되죠.”

가계부조사 참여자들은 광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비슷한 방식 그리고 개인이 알고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온도와 사투했다. 참여자11은 현재 사는 집에 작년 겨울에 이사를 왔다. 집이 오래되고 외풍이 심해 보일러를 가동했는데 감면·할인이 적용된 가스비가 28만원이 나왔다. 그때부터 난방은 거의 틀지 않았다. 비닐하우스 비닐로 모든 창문의 안팎을 봉쇄하고 잘 때 전기장판을 틀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추위가 해결되지 않았다.

“비닐하우스 치는 그런 포장지를 (창문) 바깥쪽도 안쪽도 해도 그래도 추워요. 그러고는 커튼을 남이 쓰던 거 버린 거 제가,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더 추위를 느끼고 더 아파하시잖아요. 통증이 막 있으시다 그 그러더라고요, 추우니까. 그래서 (비닐) 그렇게 해놓고 커튼까지 다 했는데도 그래도 너무 춥고. 그래서 난방을 안 틀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아낀다고 아낀다고 했는데도 작년에 20몇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 가지고. 그렇게 아꼈는데도. 이게 계속 트는 것도 아니고 ...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쓰고 자야 돼요. 그나마 그래야지 감기에 안 걸려요. 안 그러면 코감기 다 걸리고 콧물 나오고. 엄마한테도 너무 불편하고. 겨울되면 또 걱정이 되는게 난방비가 걱정돼요. 거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방이라든지 다 냉기가 있어요. 그래서 양말도 두꺼운 거, 등산 양말 그런 거 두 개씩 신고 지냈거든요.”

참여자13은 겨울에 점퍼까지 입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혹한기에는 끓는 물을 넣은 통을 안고 생활한다고 했다. 참여자25의 경우 장애 특성상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욕창이 심해질 수 있기에 광열비를 극도로 줄일 수 없다. 수급자들에게 감면·할인이 적용되고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에너지바우처를 겨울철, 여름철 몇 개월이 아니라 한 달에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참여자25가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다. 겨울철 모든 창

문에 뽕뽕이를 붙이고 극세사 이불 몇 겹을 덮고 잔다. 여름철에는 냉동실에 얼려둔 아이스팩을 안고 잔다.

“(에너지바우처) 한 방에 날아가죠. 늦어도 두 방 안에 날아가요. 쓰고도 모자라서 내 돈을 더 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여름철 겨울철로 잡으시면 안 되지.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이유는 그 계절에 맞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겨울에는 동사를 막는다든가 이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에너지바우처가 한 달 안에 끝낸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급자들 대부분 취약계층이잖아요. 수급자인데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수급자인데 미취학 아동.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아니면 노인 이런 경우일 거예요. 근로능력이 없는데 다른 취약한 부분이 겹치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죠. 그러면 에너지를 아끼고 싶어도 써야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참여자19는 우선순위 지출로 채무상환을 두고 있다. 최근 여관에서 임대주택으로 입주하며 주거가 상향 및 안정되었지만, 여관에서의 생활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에너지비용이 크게 증가했고, 그에 따라서 저축하는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명의도용에 의한 채무이지만 현 제도상 과산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금에 대해서만 상환을 하고 있다.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발생하는 광열비 그리고 관리비 지출은 채무상환을 늦어지게 만들고 있다. 또 이전보다 적은 금액을 상환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적어진 상환 금액에 독촉 전화가 찾아져 스트레스다.

“한 달에 (가스요금)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틀기가 조금 겁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예 그냥 겨울 끝날 때까지 안 틀었어요. 전기장판 쓰면 또 전기값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아예 안 쓰죠. 문, 창문 다 닫아 놓고 그냥 두꺼운 이불로 덮고 그냥 있는 거죠. 여관에 살 때는 제가 10만원, 20만원씩 저축을 했었거든요. 저축을 해가지고 100만원이나 200만원이 모아지면 바로 금융 쪽에 (채무상환) 보내주고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금융 쪽에는 하나가 끝나긴 끝났는데. 임대주택으로 옮기니까는 이제 그쪽에 줄 게 줄어드는 거지. 더 주고 싶어도 제가 쓸 게 안 되니까는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니까, 전화가 자주 오더라고요. 왜 또 줄어들었냐 하면서. 이 금액을 보내주는 거하고 안보내주는 거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광열비에 더해 주거 유지에 필수 지출비용인 관리비도 부담이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참여자15는 아내와 함께 2인 가구로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 2인 가구이지만 아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1인 가구 수급비로 생활한다. 안 그래도 빠듯한 1인 가구 생계급여로 2인이 살고있는 상황에서 관리비 9만 원을 매월 지출해야 한다. 비율로 보면 16%에 달한다.

“이것저것 빼면 돈 얼마 없어요. 관리비도 많이 낼 때는 8만 7천 원, 9만 원 돈 내고 그래서 우리는 작게 내는 거 어떤 사람은 16만 원씩 내는 사람도 있어요.”

가계부조사 참여가구 중 두 가구가 과거 관리비 체납 경험이 있었다. 참여자2는 과거 12만원의 공과금과 관리비를 체납하여 생활비를 아껴서 모았다가 냈다. 참여자 15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해 퇴거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주거복지센터와 지인들에게 빌려 납부했지만 빚으로 남아있다.

## (2) 비급여 부담으로 인한 치료 포기

의료급여는 병원비 부담을 덜어 주지만 급여항목에만 적용된다. 비급여에 대해서는 비수급자와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 실제 입원이든 외래든 적절한 치료를 받게되는 경우 비급여가 발생하기 다반사다. 자부담은 병원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 자주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참여자1은 과거 모야모야병으로 인해 뇌혈관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 모야모야병은 재발할 수도 있기에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검사비가 비급여이고 50만원이다. 매년 ‘올해는 모아서 받아야지’ 다짐하지만 검사를 받지 못한지 벌써 3~4년이 지났다. 이외에도 혈당 체크기, 인슐린을 구입하는 비용이 2~3달에 한번 약 25만원이 발생한다. 혈당 체크기와 인슐린은 당장의 생명을 위협하기에 구입 할수밖에 없지만, 미래에 올 건강에 대한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검사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항상 어떤 검사를 받을 때마다 병원 가서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돈 들어요? 얼마 정도 들어요? 그래서 싼 거면 받는 거고, 비싸면 못 받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모야모야병 이게 완치병이 아니거든요. 뇌 검사. 그러니까 혈관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그걸 계속 보는 거인데, 검사를 한 3년인가 4년인가 못 받고 있어요. 나중에 한 번 더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또 병이 생긴다면 입원해서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두 번째 수술은 못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또 발생이 된다면. 나중에 그러면 또 그냥 그래요.”

참여자10 역시 왼쪽 어깨에 석회염이 생겨 치료를 받았다. 의사는 일주일에 두 번씩 세달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첫 회 10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마주한 뒤 병원에 가지 않고 있었다.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특히 정신과와 치과 치료 시 비급여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다. 참여자15는 치아와 잇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한다. 대부분의 식사를 죽이나 물에 밥을 말아 먹는다. 주민센터 도움을 여러번 요청했지만, 주민센터에서는 비용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말한 뒤 아무 답변이 없었다.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또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지 못하니 상태가 빠른 속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치과 치료는 엄두도 못 냅니다. 이 뽑는 거는 공짜로 뽑아주더라고요. 근데 (치료)하는데 검사를 한번 했었어요. 이빨 5개를 씌우는데 240만원이 나가요. 그럼 5개를 씌우는 데 240만 원이면 나머지 (추가되는 치료비용) 돈 안 들어가요? 또 돈 들어가죠. 그러니 애초에 그냥 (포기했죠) 그랬죠. 그때 동사무소에서 한번 가서 견적을 뽑아와라, 해서 견적을 뽑아갔지, 240만 원 달라고. 근데 알아보면 뭐 해요? 갔다 보고하면 뒤에는 답이 없어요. 아무 저거 없고 그러면 나도 계속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아버린 거지. 나라에서 의료 도와주네, 그냥 해주네, 그런 말 다 거짓말이에요. 돈 안 들어가면 (치료) 안 됩니다.“

비급여로 인한 치료 포기의 경험은 반복된다. 아프거나 다쳐도 병원을 찾지 않고 건강이 악화되는 선택을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참여자13은 목과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있다. 누웠을 때 아프지 않은 왼쪽으로 자거나 그래도 아프면 앉아서 잠을 잔다. 참여자7은 오른쪽 골반이 아파서 몸을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임에도

병원비가 걱정되어 병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에 떠도는 자세 교정 자료를 찾아 자가치료를 하고 있다.

참여자11은 중학생 자녀가 아파 응급실에 갔을 때 검사를 받기도 전에 1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선 수납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했다. 그 뒤론 자녀가 아플 때는 병원에 가지만 본인이 아플 때는 웬만하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 지난 겨울 손가락이 골절된 상태에서도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찜질 등의 처치만 했다. 결국 뼈는 붙었지만 손가락 감각이 이전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혈전증 증상이 발생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검사 비용으로 20만원 넘는 돈을 갑자기 지출하게 됐지만,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가게부를 작성하던 당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열이 41.8도까지 올랐지만, 비용이 걱정돼 병원에 가지 않았다. 격리하는 2주 동안 물도 넘기기 힘들 정도로 목이 부어 체중이 14kg이나 빠졌다.

”저 올해 2월 겨울에 다쳤거든요. 제가 이게 손이 이렇게 안 구부러 지는데, 골절이에요. 안 구부러지고 그리고 감각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집에서 저 스스로 다 했어요. 얼음찜질하고 감각도 올라오게 하려고 진짜 별짓을 다 했거든요. (병원에 가면) 신경을 봐야 하니까 MRI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했어요. 여기(손가락) 자체가 살 느낌이 지금도 약간 달라요. 이 느낌이 완전히 여기(다른 손가락) 살고, 색깔도 다른데“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재난적 의료비’, 또는 경제적 이유로 의료이용 자체를 못하는 ‘미충족 의료’의 수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sup>4)</sup>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건강보험 수급자들에 비해 만성질환 비율이 높다.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는건 당연하다. 하지만 자부담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큰 검사나 치료의 경우에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라는게 내가 다쳤을 때는 많이 나가는 거고 안 다치면 안 나가

신현웅 등(2017. 의료급여 제도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선(2021.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빈곤층의 뭍찾기 20년 - 수급권자의 경험과 제도변화. 운동 판례. 이의신청을 통해 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급여별 변화와 쟁점. 재인용)

는 거잖아요. 근데 안 다치는데 주기적으로 가야 하는 것도 안 가면 안 나오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안 가요 요즘에 잘. 그러니까 어지간이 아프지 않으면 안 가, 안 가니까 안 나와.”

#### (4) 생활비 절감을 위한 소모 (피로감과 스트레스)

부족한 생계급여로 한 달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더 저렴한 곳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다. 참여자19는 한번 장을 볼 때 같은 제품들의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약 3만보를 걷는다.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간에 가면 식은땀이 나고 혈압이 올라가 위험하고 괴롭지만 살기 위해서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시도한다.

“지금 반찬 사는 것도 슈퍼를 여러 군데로 다니거든요. 가가지고 보면 이걸 얼마고 저걸 얼마고 하면 이걸 너무 비싼데 하면 딱 데 가가지고 이게 얼마고 저게 얼마고 계속 따져보는 거죠. 제일 싼 데 가가지고 구입하는 게. 그게 제가 재보니까는 한 3만 보 되더라고요.”

참여자25는 인터넷 쇼핑으로 생활용품을 구입한다. 할인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 유통기한과 수량을 확인한 뒤 저장 가능한 만큼의 양을 한 번에 구입한다. 고가의 기기를 저렴하게 사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일상에서 필요한 생필품 등을 구입하는데 소모하는 에너지가 크다.

“인터넷은 행사를 한 번씩 해요. 그럼 행사를 할 때, 집에 저장할 수 있을 만큼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 사놔요. 그러다 보니 이번 조사에서는 그게 다 빠졌어요. 겨울에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있어요. 무슨 카드 쓰면 더 할인받고 하는 거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매의 눈으로 잡아서. 그때 너무 많이 샀어요. 피곤을 거의 한 1년 2년 쓸 만큼을 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피곤하죠.”

참여자11은 작년 겨울 이사를 했다. 이사업체를 이용하면 비용이 적지 않기에 이삿날 며칠 전부터 자녀 둘과 짐을 나르기 시작했다. 추운 겨울날 차량도 없이 이삿짐을 나르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결국 이사업체를 불러 비용을 지출해야 했지만, 적은 수급비에서 이사비용과 같이 큰 지출은



한 달이 아니라 앞으로 몇 달의 생계에 영향을 주기에 실행했던 시도였다.

“(이사)비용이 비싸니까. 그래서 그거 조금 절감해 보자고 한 거였는데 너무 힘들고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사비용, 하다못해 사다리차 이렇게 한 번만 크게 실어서 집에다 한번 내려다가 주면, 푸는 거야 뭐 우리가 짐을 풀면 되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이사비용) 그걸 아끼려고 했다가 저 몸살 나고. 애들 학교 가고 그러면 제가 아침부터 계속 날랐거든요.”

생활비 절감을 위해 매일 노력한다 해도 예기치 않은 지출 한 두 번에 노력은 허사가 된다. 참여자12는 가계부조사 중간에 현관문에 있는 전자인식 출입카드를 집에 두고 나와 보안장치를 갈아야했다. 작은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었지만 이 일로 갑작스러운 지출을 하게 된 참여자12은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다’고 자신을 비하하는 한편 수일동안 우울감을 호소했다. 낮은 기초생활수급비 안에서 생활비 절감을 위해 아무리 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할지라도 이는 결국 승리하기 어려운 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 2)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 (1) 급지별 기준임대료와 실제 집 구하기의 간극

2020년 8월 발표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따르면 2020년 당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실제 임대료의 90%수준이었고, 이를 2022년까지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기준임대료는 현실화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4급지에 사는 참여자25의 월세는 30만원이다. 4급지 1인가구 기준임대료는 16만3천원으로 매달 13만7천원의 임대료를 생계급여서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임대료가 줄지만, 참여자25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월세어를 이용하는 1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없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1평 이하가 공급되지 않아 1인 가구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청년주택과 같이 1인 가구가 신청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월세어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은 물량도 적고 (평수) 입주기준에도 안 맞고. 수급권에 있지만, 또 나는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 특성상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은 더

## 112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없고. 청년 주택을 짓는다고 하는데 나는 장애인이고 수급권에 있고 청년은 청년인데 거기에 들어가도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 봐야 솔직히 회전하면 끝일걸요?”

이번 가계부조사에서 주거급여가 실제 임대료 전체를 포괄하지 못해 생계급여에서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가구는 참여자25를 포함해 3가구였다. 4급지에 거주하는 참여자24는 137,000원, 3급지에 거주하는 참여자19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보증금 전환에 따른 임대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높아 29,800원의 임대료를 생계급여에서 추가 지출하고 있었다. 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 금액을 추가할 시 참여자9는 99,900원, 참여자15는 30,648원, 참여자23은 13,530원을 생계급여에서 추가로 지출하고 있었다.

### (2)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의 어려움

이번 조사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는 2가구였다. 학교에 재학 중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교육급여 대상이 된다. 하지만 두 가구 모두 현재의 교육급여 수준은 학교를 다니는데 필수적으로 지출해야하는 비용을 보충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입을 모았다. 더욱이 사교육 시장이 활발해지고 학교 외 별도의 학습을 하지 않으면 학교 공부 진도를 따라가기 힘든 세상이다. 참여자11은 자녀가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학원비가 비싸 보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큰 애 같은 경우에는 엄마 제가 지금 영어가 조금 배우고 싶고 수학 이랑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학원은 지금 엄마가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이제 그랬거든요. 학원도 제가 알아봤는데 (과목)하나당 20만 원이예요. 수학이나 영어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는... 두개 해주려면 벌써 40만원, 50만원인데. 학원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참여자25 역시 상황은 같았다.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강의와 문제집으로는 한계가 있어 진도가 뒤처진다고 했다. 더불어 참여자25가 사는 지역에는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교육급여로는 급식비조

차 충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자녀가 매일 똑같은 옷에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낡아도 선뜻 해주지 못해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 참여자11은 올해 고등학생이 된 자녀에게 한 달 용돈으로 교통비를 제한 7만원, 중학생인 자녀에게 3만원을 준다. 용돈이 적다보니 친구들이 함께 가는 자리에도 어울리기가 힘들다. 자녀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며 친구들이 입고 있는 옷과 신발 등이 비교되는 상황으로부터 자녀들의 자존감이 낮아질까봐 걱정스럽다고 했다. 참여자11이 자녀에게 주는 용돈은 2017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실태조사의 ‘자녀 용돈’ 항목을 크게 상회한다. 최저생계비 마켓바스켓방식의 지출 기준에 따르면 자녀 용돈은 월 1회 6,250원이기 때문이다.

“애들이 지금 사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그래요. 성숙하고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번씩 이렇게 투정 부릴 때 있잖아요. 엄마 왜 우리 집은 맨날 이렇게 살아야돼? 다른 친구들은 옷도 좋은 거 입고 신발도 좋은 거 신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돼? 이제 그래요. 엄마가 신발 사줬잖아, 3만 원짜리, 2만 원짜리라도 저는 동네에 그냥 (신발가게에서 파는) 그거 사주고 그랬는데 (메이커 신은) 친구들하고 비교가 된다는 거죠.”

### (3) 열심히 살 의지를 꺾는, 친절하지 않은 제도

참여자11은 자녀들의 식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은 뒤 5만원어치 고기를 사들고 집에 갔다. 추가소득으로 인해 한동안은 자녀들이 먹고 싶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더 사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급여에서 약 50만원이 삭감되어 지급됐다.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주민센터에 신고까지 했었다. 당시 급여가 삭감된다는 안내는 받지 못했다. 참여자11은 예금으로 인해 수급비가 삭감된 경험도 있었다. 참여자11은 자녀들이 성장한 뒤 자신이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예금·적금 붓기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병원비 등으로 인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들었던 적금을 해약하고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여기에 과거 예금액이 기준을 초과했다며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비가 삭감됐다. 예금·적금이 얼마가 되었을 때 수급비가 얼마나 삭감되

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재산 기준과 소득공제율이 낮고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그리고 해당 정보가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는 문제는 수급자들이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방해할 뿐 아니라 좌절시킨다.

“제가 좀 더 벌어서 우리 애들 좀 더 먹이려고 알바를 하잖아요. 알바를 해서 제가 60만 원도 벌어보고 70만 원도 벌어 봤더니 다 삭감돼 버리더라고요. 삭감도 그냥 10만원, 20만원도 아니고 40만원, 50만원씩 까버리니까. 60만원, 70만원 벌었는데 45만 원 공제해 버리니까 결국에는 25만 원 번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많이 깎아보려면 누가 일하겠냐고, 차라리 그 돈에 맞춰서 사는게 더 낫죠. 의욕이 안 생겨요. 치고 나갈 수 있게 발판을 만들어주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축적이 되거나 매달 고정 수입이 들어올 수 있게 직장을 잡았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일어나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조금 일어나 보려고 하면 저한테 다시 주저앉게 만드니까 이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 (4) 함께 살고 있지만 없는 사람, 외국인 배우자 규정

참여자15는 현재의 아내와 19년 동안 함께 살았다. 아내는 주민등록에도 올라와 있지만, 한국 국적이 아니어서 참여자15는 2인 가구가 아니라 1인 가구 수급비를 보장받고 있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진 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다. 참여자15는 아내의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봤지만 언제나 기다리라는 말 앞에 좌절을 반복해야 했다. 아내는 과거 식당 등에서 비공식 노동을 통한 임금 수입이 있었지만, 코로나19가 있기 전부터 디스크로 인해 일을 하기 힘들어졌다. 그리고 5년 전 갑상선암 수술도 받았다. 다행히 동포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건강보험료를 내고 치료비도 충당하고 있었지만 이는 모두 갚아야 할 빚이다.

“실제 아내 같은 경우도 한국 남자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병원비라든지 혜택을 좀 봐주시면 좋은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10원 한 장 없고. 그 사람도 지금 5년 채 안 됐는데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어요. 없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어떻게 이래도 치이고 저래도 치이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갑상선 암이 갑자기 생겨갖고 고려대학병원에서 (수

술하고) 지금까지 약 먹고 있어요. 건강보험 해도 약값이 한 번 가면은 6만원, 7만 원씩 나와요. 여기서 별거 다 해봤어요. 이주(국적취득)를 하기도 힘든 이유가 3천만 원이 통장에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번 시도 해봤었어요. 출입국 같은 데다가 한번 해보고 또 구청에도 해보고 동사무소에도 해보고, 안 되더라고요. 물어볼 때만 잘 물어보지, 나중에 해답이 없어요. 물어보면은 자기네들이 도와준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면 연락이 없어요. 연락해 드릴게요, 이려고 끝이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

### 3) 희망하는 변화

#### (1) 적절한 급여인상에 반영된 희망

가계부조사에 참여한 1인 가구가 꼽은 한 달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평균 913천원, 적절한 비용은 1,418천원이다. 이러한 비용은 어떤 점들을 포함하고 있을까? 최소한의 금액, 적절한 금액을 대답하며 응답자들은 ‘미뤄둔 치료도 받고’, ‘고기도 사먹고’, ‘빌린 돈도 갚고’, ‘저축도 하고’, ‘새 옷도 사고’, ‘지인들 행사에도 참석하고’, ‘문화생활도 하고’와 같은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는 현재 가장 박탈을 느끼는 부분이자 여유가 생기면 가장 빨리 채우고 싶은 욕구일 것이며, 현재의 급여수준이 법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의하고 있는 급여 목표에 미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의료비, 경조사비, 의류구입비, 가전제품구입비 등의 비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지출이다. 그런 순간을 마주했을 때 해당 비용지출을 포기하거나 낮은 식비지출을 과도하게 줄이거나 들어둔 적금을 해약하거나 사적 관계망을 통해 빚을 지게 만드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급여 현실화는 시급한 과제다.

#### (2) 제도 변화에 대한 기타 의견

참여자7은 제도에 대한 안내가 적절하지 않고 친절한 담당공무원을 만나길 바래야 하는 주민센터와 구청의 소극행정을 지적하며 수급(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아르바이트와 저축으로 인해 소득삭감의 경험이 있는 참여자11도 같은 의견을 냈다. 얼마나 저축하고 소득활동을 했을 때 얼마나 삭감된다는 내용이 정보가 안내되지 않기에

급여삭감이나 중지 등에 대한 불안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어렵고 희망을 꺾는다고 지적하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참여자11은 2019년 수급권을 보장받았다. 이전에도 주민센터 문을 여러차례 두드린 경험이 있지만, 법률상 이혼하지 않은 배우자를 이유로 수급신청을 거절당했다. 사실이혼에 대한 판단은 이전부터 해왔고,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서 가족관계가 해체 되는 등의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안건상정을 의무화하기까지 했지만 특히 이러한 특례에 대한 정보는 수급(권)자 앞에 도달하지 않는다. 참여자11은 이번 가계부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활동가와 대화 중 해당 내용을 알게 되었다. 또 참여자11은 작년 여름 생계급여 수급자도 한부모 아동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어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담당공무원의 생계급여와 한부모 아동양육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안내에 신청하지 않고 돌아선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였다. 2021년 5월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한부모 양육수당을 10만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민센터는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해 정정하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건 수개월이 지난 뒤 주거복지센터 활동가를 통해서였다.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그로 인한 책임을 수급(권)자가 모두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에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다. 하지만 지자체의 소극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유지하며 특정 상황에 대한 특례를 늘리고 완화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더 어렵게 만들며 예산을 소극적으로 집행하는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 수급(권)자들의 알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예산편성을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여자19는 과거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했다. 현재는 허리 디스크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지만 건강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의 자활사업이나 공공일자리에선 자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 수, 기간, 임금 등의 문제가 있으며, 건강상태가 나아진다 해도 과거와 같이 민간노동시장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참여자9와 참여자14 역시 과거 어린이집, 사회복지 경험을 살려 일을 하

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고 했다. 더불어 취업했을 때 일자리의 안정성과는 관계없이 급여가 곧바로 박탈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했다. 과거의 노동경험과 현재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일자리 정책 그리고 급여가 바로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탈빈곤하는 시점까지 연계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외 가장 많은 참여자들이 개선해야 한다고 입 모은 기타의견은 비급여와 관리비 부담의 문제였다.

## 4. 활동가 FGI를 통해 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낮은 급여로 인한 건강 악화와 스트레스

두 달간 가계부조사에 동행한 조사활동가들은 낮은 급여가 건강 악화와 일상의 긴장, 스트레스를 반복하게 만든다고 했다. 참여자12는 부모님 차례에 참석하진 않지만 비용을 분담하느라 추가 지출이 발생하고 있었다. 참여자10은 지인의 경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교통비와 경조사비를 지출했다. 참여자17은 향후 다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오래전부터 걱정하고 있었다. 수급비에서 추가 지출이 발생하면 기존에 지출하던 다른 비용 중 무엇인가를 줄여야 한다. 가장 쉽고 가까운 선택지는 식비를 줄이는 것이다. 통신비, 인터넷, TV 요금, 광열비와 관리비 등 고정지출 비용을 체납하는 것 보다 덜 위험하고 덜 피곤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조사활동가들은 추가 지출이 없는 달에도 일상에서 비용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는 계속된다고 했다. 참여자4는 과자를 살 때 먹고 싶은 과자가 아니라 할인이나 행사하는 과자를 샀다. 참여자1과 참여자9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거나 마트가 문을 닫기 전 할인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장을 봤다. 참여자1과 동행한 조사활동가는 저렴한 식품을 찾는 것이 보통 생각하는 가성비 제품이 아니라 가격이 저렴하고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사기 위해 발품을 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자3은 그달 지출한 광열비 등 고정지출 비용을 10원 단위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지출이

있을 때마다 잔액을 기억해야 고정비용 체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10과 동행한 조사활동가는 참여자10이 만성질환으로 인해 균형 있는 식생활이 필수이지만, 현재의 급여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참여자5와 동행한 조사활동가는 정해진 금액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긴장으로 인해 다른 삶, 미래에 대해 상상할 여유가 없고, 추후 지출이 필요한 비용을 모으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며 또 다시 추가 지출을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계급여를 쪼개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고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수준으로 급여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사에 참여한 활동가들 다수가 주거 유지에 필수적인 관리비와 광열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참여자3과 동행한 조사활동가가 집에 방문했을 당시 냉기가 돌았고 ‘잘 때 보일러나 전기장판을 켜느냐’는 질문에 참여자3은 ‘겨울에는 원래 추운거’라고 답했다고 한다. 참여자3뿐만 아니라 가계부조사 참여한 가구들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에 있었다.

## 2) 고립감, 관계의 단절

조사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고립감과 사회 활동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고독사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참여자15는 수급자가 된 이후 한동안은 지인들과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생활 수준이 달라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격차가 크다는 것을 느끼면서부터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참여자9는 역시 인간관계에서 소소한 일상을 하지 못하는게 힘들지만 매번 얻어먹을 수는 없어 한두번 약속을 피하다 보니 친구, 지인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다고 했다. 참여자12는 2월 지인들이 인천에 함께 가자는 제안을 비용문제로 거절했다. 또 3월 31일 가계부 오늘의 메모에 “XX 동생이 양평에 같이 가자는데 거절했다. 움직일 수가 없다. 그놈의 돈”라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참여자2는 종종 경마장에 가서 100원, 1,000원 배팅을 한다. 경마를 통해 추가 수입이나 한 방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취미 활동이다. 경마장에 다녀오거나 활동가가 다녀간 날 오늘의 메모에는 “마음이 괜찮다”는 메



모가 적혀 있었다. 그렇지 않은 날에는 대부분 집에 있으면서 “왜 사는 지 모르겠다.” “우울하다.” “시간이 안간다.” 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사례자10의 가게부에도 역시 조사활동가가 다녀간 날 오늘의 메모에 “대화해서 좋았다” “감사하다” 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많은 참여자가 고립감을 낮추기 위해 산책을 하고 있었다. 참여자18은 매일 같은 경로로 산책을 다니고 사례자10은 집에서 가장 멀리 가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한 바퀴를 돌았다. 참여자17은 반려견과 함께 사는 것이 그나마 고립감을 덜어 주지만, 고독사의 위험을 느껴 잠을 잘 때와 외출할 때조차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

조사활동가 다수는 고립감을 낮추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참여자17과 함께한 조사활동가는 돌봄 서비스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같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의 한계를 지적했고, 일상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한 관계 형성보다는 낮은 급여의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했다. 실제 다수 사례자의 가게부에서 급여일 직후 지인을 만나 외식하는 비용이 증가했다. 참여자2의 경우 급여일이었던 2월 18일과 3월 18일 모두 지인을 만났고 오늘의 메모에 각 “일주일 내내 방에만 있다가 수급날이라서 한 번 바람쐬고 오니 쾌찮다”, “신당동 친구 집에서 삼겹살에 떡갈리 한잔 거나하게 마시고 저녁까지 얻어먹고 편안하게 집으로 왔어요” 라는 메모를 남겼다.

참여자3과 동행한 조사활동가는 고립감과 관계단절 문제의 원인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낮은 선정기준을 꼽았다. 참여자15는 수급권을 보장받기 이전 운영했던 운송업체와 금은방의 부도와 갑작스러운 병원비지출로 인한 채무를 갚기 위해 가용한 재산을 모두 소진하고도 빚이 남아있다. 조사활동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이 너무 낮아 가용한 모든 재산을 소진하고 소득이 절대적으로 없어진 상태에서 진입 가능하다보니, 이미 수급자로 선정되었을 때는 일부 관계가 정리된 뒤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까다로운 선정기준의 개선은 빈곤에 빠지기 전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현재의 문화바우처가 비용이 적고 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을 찾기 어렵고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사활동가들 모두 고독사 등 사회문제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관계 형성을 지지하

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3)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의료비 등 필수지출의 어려움

장애특성이나 질병에 따라서 선택할 수 없는 지출이 발생한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자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209만원까지 보조기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동휠체어 종류가 다양해지며 3,000만원을 웃도는 제품이 나와 있는 현재에도 지원되는 금액은 17년째 209만원이다. 참여자22와 동행한 조사활동가는 자신의 장애특성과 체형 그리고 사용하는 기능에 따라서 보조기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추가되는 금액은 온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으로 돌아오며, 그 비용을 저축하기 위해서 몇 달에서 몇 년간 식비 등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보장구를 구입한 뒤 발생하는 수리 및 부품 교체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참여자18은 가게부를 작성하는 기간에 안경을 구입했다. 안경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의료기기이며 개인의 눈 상태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참여자18은 시력이 많이 안 좋아 한 번 맞출 때 비용이 크게 든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눈에 더 안 좋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큰마음을 먹어야 살 수 있다. 참여자18과 동행한 조사활동가는 최소한 신체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보완하는 보장구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비용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기에 관련 지출 부담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또 의료급여 외에 현행 의료보장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액의 의료비 지출이 있을 때 사적으로 융통 할수있는 방법이 없어 공적지원을 알아봐야 하는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같은 질병에 대해 반복 지원을 하지 않는다. 장애, 만성질환, 희귀난치질환 모두 같은 질병으로 인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긴급한 상황임에도 구청에서는 긴급하지 않다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 더불어 우선 지출을 하면 추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하는데, 우선 지출할 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부담상한제 등 선지출을 요하는 의료보장제도는 선택지에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실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보장제도, 비급여의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참여자10과 동행한 조사활동가는 치

료를 받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치료가 미뤄지고 적절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이 반복될수록 삶의 의지를 꺾는 개인에게도 사회에도 부정적인 해악을 공공에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 4) 계속되는 문제 부양의무자기준

참여자5는 과거 수급신청을 했지만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해 탈락한 경험이 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되고,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현재 참여자5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수급권을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부양의무자기준을 초과해 의료급여에서는 탈락했다. 건강보험을 유지해야 병원을 이용할 수 있기에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부담이 크다. 11,000원의 최저보험료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과거 노숙했던 기간에 체납한 보험료까지 분할상환을 하고 있다. 58만원 수급비에서 매월 7만원이 건강보험료로 지출된다. 그렇다고 의료이용을 적절하게 하고있는 것도 아니다. 의료급여에 비해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병원을 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배제되는 적은 생계급여로 많은 의료비를 감당하는 동시에 필요한 만큼 치료를 받지 못하는 두 가지 박탈을 낳는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의료급여 사각지대는 여전히 73만 명에 달한다.<sup>5)</sup>

### 4. 제도개선 방안

#### 1) 기준중위소득 도입의 의미 퇴색, 실제 생활 반영하는 급여수준 현실화

##### (1)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출방식조차 지키지 않으며 기준중위소득을 억지로 낮게 유지하는 결정을 반복해 왔다. 현실의 삶이 반영되지 않은 채 예산 맞춤, 고무줄 산식에 의해 낮게 결정 및 유지되고

5) 비마이너(2022.01.17., 의료급여 못 받는 빈곤층 약 73만 명, '3%'로 관리되는 수급률,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98>)

있는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삶의 질 하락으로 직결된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이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간값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빈곤층에게 현재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 복지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를 이유로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현실화를 외면해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가 빈곤층에게 더욱 과중하게 지워졌으며, 경기회복은 K자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양상으로 드러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답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을 개선하는 동시에 복지 기준선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은 전 국민의 복지접근권을 개선하는 노력이었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간값과 기준중위소득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실제 중간값에 맞춰 기준중위소득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갑작스러운 예산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비현실적인 기준선으로 전 국민의 사회보장 접근을 가로막는 기준중위소득은 예산이 아니라 국민 권리의 문제다. 시급한 현실화조치가 필요하다.

### (2)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상향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개별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을 도입했음에도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은 제자리걸음이다.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한 취지에 맞게 기준중위소득의 30%, 40%로 낮게 정해진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상향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빈곤선을 중위소득의 40%~60%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50%를 빈곤선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전체 국민 소득의 중앙값의 30%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가? 그 금액을 어떻게 적정급여라 할 수 있는가? 기초생활보장법은 제8조 2항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고 되어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역시 법제12조의3의 2항을 통해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고 되어있다. 법 개정사항도 아니기에 선정기준 상향에 대한 조속한 예산반영을 통한 계획을 수립 및 실시해야 한다.

### (3) 재산, 소득기준 변화

2015년 조사<sup>6)</sup>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80.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신청자 중 절반이 넘는 67.59%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탈락자 중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친지, 이웃에게 도움을 받는 가구는 24.38%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더 절약해서 생계를 꾸려나간다고 답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재산액과 실제 소득과 실제 소득이 아니더라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개편과정에서 재산과 소득환산율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의료급여 대도시 기준 5,400만원이라는 낮은 수준의 기본재산액은 더 열악한 지위에 빠져서야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만들고, 금융재산을 월 6.26%로 소득환산하는 것은 연 75.12%로 금융소득을 보는 것으로, 사실상 약간의 저축이라도 갖고 있다면 급여에 진입하지 말라는 압박에 가깝다.

2017년 8월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낮은 재산기준에 대한 연구를 거쳐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대도시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본재산액 5,400만원은 2009년부터 1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기준이었다. 그리고 2020년 기본재산액이 완화되었지만 대도시 기준 생계·주거·교육급여에서만 6,900만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지난 11년간 전세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인상수준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료급여 기본재산액은 인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현재의 기본재산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율 모두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에서 제외된 의료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에 적용되는 기본재산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개편해야 한다.

#### (4)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었으나 정부는 공약을 파기한 채 임기를 종료했다. 2017년 19대 조기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3월

6) 보건사회연구원(2015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22일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토론회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선언했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에서 보낸 질의서에 부양의무자기준을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각 연1억, 9억으로 완화, 의료급여에는 완화기준조차 적용하지 않았다. 특히나 정부는 2021년 9월 위와 같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완화조치에 대해 ‘60년 만에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없어졌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소식을 듣고 동사무소를 찾았던 이들은 부양의무자기준이 여전히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서야 했다.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 주거급여 수급자 수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2,215천명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실시되기 전달인 2018년 9월 주거급여 수급자 수 1,349천명과 비교했을 때 6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조치가 적용된 생계급여 수급자는 1,241천명에서 1,532천명으로 23.4% 증가,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조치마저 제외된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1,400천명에서 1,435천명으로 2.5%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급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는 것은 주거급여가 여전히 낮은 선정기준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근로능력평가를 보지 않고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됨으로 인해 경기변동에 반응하는 제도로 기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작동하며 해당 기준에 의해 수급권을 박탈할 뿐 아니라, 가족에게 소식과 위치가 알려지기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제 자신의 소득 하락에 따라 복지제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폐지하는 것이 빠른 시일내에 필요하다.

## 2) 가구별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는 제도 운영

### (1) 근로소득 공제 확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

에서 30%를 공제하며, <표10> 수급(권)자의 개별 특성에 따라 의료급여를 포함한 소득공제율을 달리하고 있다.

<표10>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근로·사업소득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75세 이상 노인(1947.12.31.이전출생자)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근로·사업소득	30%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	근로·사업소득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30%

해마다 소득공제의 범위와 공제율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낮다. 현행 소득공제율을 통해 약간의 소득보충은 가능하더라도 추후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이동, 탈수급, 탈빈곤할 가능성은 적다. 특히나 전체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소득 공제율은 30%에 불과하며 의료급여는 제외하고 있어 제한적이다. 더불어 2015년 7월 제도개편 이후 탈수급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1, 2인가구의 경우 200%)를 넘지 못하면 의료, 교육급여를 유지해주던 이행급여는 아예 폐지되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정 취지였던 ‘All or Nothing’ 해결, 계단식 탈수급과는 상반된 조치였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제1조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의 급여수준과 일부를 제외한 근로소득에 대한 급여삭감은 자활을 돕지 못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보편적 공제율 도입 및 확대를 통해 소득 일부를 보전, 탈빈곤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주거 유지에 필수 지출되는 광열비와 관리비 지원책 마련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에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필요한 금품”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균형잡힌 식생활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다. 생계급여 수급권을 보장받는 경우 가스·전기·수도 요금에 대해 감면·할인을 받는다. 가스요금은 4월~11월 6,600원, 12월~2월 2,400원, 전기요금은 6월~8월 20,000원, 9월~5월 16,000원 할인이 적용된다. 수도세의 경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서 할인·감면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노인·장애인 등 특성을 충족하는 가구에 1인 가구 기준 연 최대 137,200원의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하지만 광열비에 대한 감면·할인과 에너지바우처를 적용하더라도 여름에 덥지 않고 겨울에 춥지 않은 온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심층면접조사에서도 드러났듯 에너지비용이 부담되어 사용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포기하며 살고 있다.

관리비의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리비의 경우 3개월 이상 체납 시 퇴거위기에 처하기에 주거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주거유지비다. 소병훈의원실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2019년 관리비 체납건수가 8만821건으로 전년도 조사 14만7천662건 대비 82.7%가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급격히 늘었지만 이전에도 상당한 가구가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었다. 민간임대주택이나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주거를 상향이동할 때 관리비가 부담돼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특히나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가 높고, 최근 관리비가 비싼 도시생활형주택이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하는데 주거유지비를 이유로 포기하거나 과도한 생계 급여에서 주거유지비를 추가 지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 주거 급여에 관리비를 포함하고, 광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3) 수급권자 권리보장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민주적 운영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신청을 하면 신청일에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신청을 하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간 뒤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전달 받고, 서류를 준비해 다시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수급자가 제출할 수 없을 시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을 서류 미비로 보고 수급신청을 거절한다.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올 수 없는 경우에도 보장기관이 우편발송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신청서류를 접수조차 하지 않는다. 이 절차에 2달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수급신청가구 전원이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함에도 1년치 통장거래 내역서를 요구한다. 이는 임의서류이기에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하고 요구되어선 안되지만 현장에서는 미제출 시 수급신청이 거절된다. 결국 통장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기간만큼 수급신청 기간이 늘어나거나 수급신청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신청을 한 이후에도 동주민센터의 초기조사, 구청의 방문조사, LH공사의 방문조사를 받아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연금공단의 활동능력평가를 요구받기도 한다. 이러한 조사를 기다리고 받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과정은 그 자체로 수급신청을 포기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낙인감을 경험하게 한다.

2009 기초생활수급가구 실태조사<sup>7)</sup>에 따르면 수급신청과정에서 서류가 복잡하다는 답변이 47.4%로 가장 많았고, 수급확정 이후에도 응답자의

7) 광정숙의원,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이 주최한 토론회 ('10.10.15)에서 발표한 실태조사이고, 조사대상은 수급가구 및 신청탈락과 중도탈락을 경험한 가구로서 일반수급가구와 조건부과수급가구를 모두 포괄하여 2009년 7월부터 2009년 8월까지 2개월에 걸쳐 수행한 것으로 빈곤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설문은 가가호호 방문 또는 지역자활센터 등을 찾아 면접조사함., 591부 회수 중 539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됨.

24%가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요지, 급여의 종류 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수급확정 이후에 발생한 수급내용 변경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도 약 50%가 변경 내역을 통보받지 못하거나 정보를 알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2014년 비수급 빈곤층 중 수급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 탈락한 사유에 대한 조사<sup>8)</sup>에 따르면 응답자의 18.3%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고 답했다. 수급내용에 대한 변경 통보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번 조사에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급비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알권리, 신청권, 이의신청권 등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급신청과 이의신청 기간동안 급여를 우선보장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복잡한 제도를 정비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알권리와 제도접근권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 수급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수급자의 보장기관 평가제를 도입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과 매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배석해야 한다.

---

8) 문진영 외,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4)

<함께 한 분들>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조사활동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임재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규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강지현),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권수진),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시형), 대구인권운동연대(서창호), 대구쪽방상담소(신혜령), 부산반빈곤센터(임기현, 최고운), 빈곤사회연대(정성철), 성북주거복지센터(김선미, 김혜선),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선희), 홈리스행동(박사라, 안형진, 이동현, 황성철), 한국도시연구소(김준희)

두 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가계부작성을 위해 수고해주신 전국 25개의 수급가구에 감사로 전합니다.

## 토론 1.

박영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9. 7. 법률 제6024호로 제정)의 제정이유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생활보장에 관한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기준등을 명문화하여 민간의 민주적 참여와 동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함” 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지명하는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고,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5명 이내,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 규정만 봐서는 민간위원은 적어도 10명이어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위촉된 위원들의 소속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토부·교육부·기재부·행안부·고용부 차관 총 6명의 고위직 공무원 외에, 전문가 위원 중 3명은 국가 및 지방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그 전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역시 위원 중 3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위원이었다. 이들 위원들은 전문성은 있더라도 정부 방침에 반하는 의견을 유지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과반수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독립적 의사결정은 어려운 구조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독립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모든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승인”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한 명이지만, 기획재정부가 불가하다고 하면 나머지

위원들이 모두 찬성한다 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은 결정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위원은 나머지 위원들이 찬성하는 인상안에 대해 반대하는 명확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다른 위원들에 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회의결과를 사실상 좌우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실제로는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역시 개인차가 있지만 기획재정부 측 위원은 회의에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위원이 빠진 회의는 나머지 위원들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뿐,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에 의해 얼마든지 다시 뒤집힐 수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의결기구이다. 독립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심의·의결기구는 이른바 “통범부”에 지나지 않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스스로 정한 기준중위소득 결정방식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다. 2021년 결정 당시 발표된 보도자료에 포함된 문구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즉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이 합의된 산출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은 작년도에 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을 존중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sup>9)</sup> 짐작컨대, 해당 문구가 보도자료에 포함된 것도 위 “다수” 위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정하고(제1항),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위 규정에 따라 202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증가율(기본증가율)을 적용하고, 또한 소득분배지표의 공식 통계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됨에 따른 현행 기준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의 격차를 6년에 걸쳐 해소하기 위해 연 1.98%의 추가증가율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원칙은 그렇게 결정된

9) 보건복지부, 국토부, 교육부 2021. 7. 30.자 공동 보도자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원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중위소득의 3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해당 값의 70%만을 적용한 인상률이다.

해에도 그 다음해인 작년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예를 들어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대표들이 협상 등의 과정을 거쳐 입장을 조율하는 위원회가 아니다. 이해관계자가 있다면 자신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와 인상을 최대한 제한하려는 기획재정부 정도이다. 그러나 이들의 협상은 기초생활보장급여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협상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선정기준이자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법률에서 제시한 기준이 명확해서 이를 두고 협상이 벌어질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준중위소득을 가지고도 협상 같은 것이 벌어지고 있다. 기준점은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인상률이다. 협상 중 상당부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밖에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다. 작년 기본인상률의 70%만 적용키로 한 것도 그런 협상의 결과일 것이다. 그래서 왜 70%인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같은 행정부 소속 심의·의결기구의 기본적 기능은 무엇일까. 결국 해당 부가 기안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은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행정부가 임의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현행의 구성과 운영방식은 이러한 최소한의 역할마저 왜곡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관한 사항 외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3년마다 수립되는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의결이다.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은 주로 급여별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같은 전반적 과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때 정부의 “뜻”에 맞지 않은 내용은 한 자도 들어가기 어렵다. 그 결과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2017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대상자별·급여별 단계적 폐지”를 과제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2020년 의결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은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 마련”으로 후퇴한 채

의결되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내의 논쟁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수립 시까지 마련하는 의료급여 개선방안은 부양의무자의 기준의 단계적 폐지방안 등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한다는 내용을 부대의 의견으로 덧붙이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브리핑 자료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부대의견은 왜 정작 계획에는 담기지 못했던 것일까. 정부가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기준 ” 폐지” 방안을 검토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조차 극구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대의 의견” 으로 덧붙이고 “브리핑 자료” 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위와 같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과정에 비추어 기준중위소득 결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실은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법률에서 기준과 결정방식을 명확히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원칙대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 회의자료, 회의록과 회의결과의 투명한 공개
- 정부출연기관 소속 연구위원의 위촉은 전문가 위원으로 한정하고, 다른 독립적 전문가가 없는 경우로 제한하여 최소화
- 당사자의 의견제시 및 수렴을 위한 공개적 절차 마련

## 토론 2.

---

김태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



### 토론 3.

---

이용재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토론 4.

---

민영신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